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46-01

OPEN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17 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3.05.17.~2023.10.17
- 주관연구책임자 : 박현 전문위원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강경남 연구위원
 - 연 구 원 : 조상규 부연구위원
 - 연 구 원 : 김애리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6
3. 연구범위 및 연구체계	7
제2장 IP금융과 IP투자	9
1. IP금융 개념 및 IP투자유형	11
2. IP투자의 필요성	17
제3장 국내 IP투자 현황	19
1. 국내 IP금융 현황	21
2. IP투자 성공사례	30
제4장 주요국 IP투자현황	37
1. 미국	39
2. 중국	45
3. 유럽	51
4. 일본	55
제5장 IP직접투자펀드 조성방안	65
1. IP직접투자펀드시장 및 규모추정을 위한 방향성	67
2. IP직접투자펀드 적정 필요 규모	72
3. 기대되는 무역수지개선 효과	77
제6장 IP직접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개선방안	79
1. 모태펀드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의 확대	81
2.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83
3. 민간투자금 유치 방안	84
4. IP투자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86
참고1 국내 IP직접투자펀드 조성규모 추정치(3년치, 5년치 데이터)	87
참고2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필요규모	89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범위 및 연구체계



제1장 |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IP가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 핵심요소로서 그 가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IP금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IP를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이 기업의 핵심자산으로서 가치형성과 기업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
 -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00년대 들어 50%를 넘어 서며 '15년에는 84%, '20년에는 90%까지 확대됨*
 - * 출처: Ocean Tomo,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20년)
 - 우리나라도 KOSPI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등 무형자산의 비중은 '08년 20%에서 '12년에는 25%, '16년에는 3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04.17.)
-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을 구성품의 결합체가 아닌 IP포트폴리오의 복합체로 인식하기 시작함
 - 종래 스마트폰을 7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부품결합체로 보는 제품적 시각에서, 이제는 총 7만여 개 이상의 국제특허로 구성된 특허복합체로 보는 IP시각으로 관점이 변화됨
 - R&D결과로서 IP가 아니라, IP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P는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과 투자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전형적인 기업의 금융자원 확보 방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신용도, 사업모델 등에 기초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투자를 받는 것이었으나 IP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IP에 기반한 금융구조가 형성됨

- IP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의 IP금융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및 유럽은 정부 주도하에 IP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등의 다양한 IP가 금융에 활용되고 있음.

○ 이처럼 IP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IP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IP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됨

□ 기술혁신형 초기 기업에 대한 IP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특성상 투자가 적합하나, 국내 IP금융은 대출 중심임

○ 국내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여전히 기술집약형 혁신 기업은 사업화 자금조달 곤란

*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7% 수준에 그쳤음 (출처: 이노비즈협회('22.11), 중소기업 IP창출, 활용, 보호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고서)

** 기술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대환 불확실성이 높고 현금흐름도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IP담보나 IP 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IP가치를 인정받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시급함

○ 우리나라의 IP금융은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을 통해 '21년 기준으로 지난 '17년 대비 12배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P투자* 규모는 낮은 편임

* IP투자 : 투자기관의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

○ 특히, IP투자에서도 지분을 통한 기업투자의 비중이 높고 IP에 대한 직접투자는 시작 단계에 있음

- 전체 IP투자규모 중 직접투자규모는 1.7*%에 불과해 직접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

* '22년 국내 IP투자 중 직접투자의 비중 : 1.7% (= 221억원 / 12,968억원)

○ IP직접투자는 특허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 분석이 필수적인 고난이도 투자 영역으로서, 민간의 자발적 조성에 한계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20년부터 IP직접투자 펀드를 본격 조성하고 향후 지속 확대 계획

□ 이에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가 필요

2. 연구 필요성

- IP직접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미활용특허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할 수 있음
 - 국내 중소기업·공공연의 상당수 우수 특허는 활용처를 찾지 못해, 소멸되거나 외국 NPE 등에 매각되는 경우가 다수임
 - *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 : ('20) 22.1% → ('21) 27.7% → ('22) 27.9%
 - **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소멸특허 건수(등록료미납) : 연간 약 2만여 건 수준
 - 우리기업인 뉴라컴(Wi-Fi 6)¹⁾ 및 LG이노텍(무선충전)²⁾의 특허는 해외 NPE로 매각되어 국내기업 대상 특허침해 소송 등에 활용
 - IP직접투자펀드는 우수 IP를 발굴하여 이를 수익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우수 IP가 소멸되거나 해외기업 또는 해외 NPE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IP직접투자펀드에서는 해외 수익화 과정에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므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가능
 - 국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만성적자로 '22년에는 26.2억\$의 적자를 냄
 - ※ 영국(△14.4억\$), 미국(△11.4억\$) 등에서 산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큼('22)
 - 국내 우수 IP를 바탕으로 해외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이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
 - ※ 특허수익화 기업 A社は 매입한 WiFi 특허로 美 통신사 대상 550억원 수익창출(275배 수익)

1) 美 델, 특허괴물에 피소…특허는 韓중소기업이 만들었다(법률신문, '23.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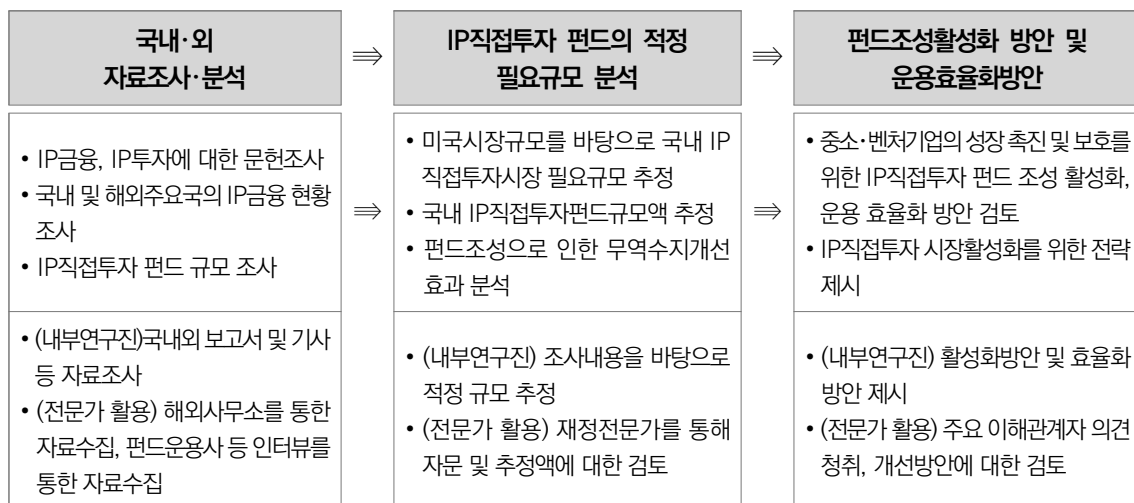
2) LG 기술 사들인 유럽 특허괴물, 삼성전자에 소송(서울경제, '21.05.05)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IP직접투자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국내·외 IP직접투자 펀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 시장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방안을 마련
 - IP직접투자 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을 통해, IP직접투자 조성 활성화와 운용효율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의 기대효과)** IP 선진국 수준의 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新투자시장 개척 및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
 - 정부의 조성재원 분배 원칙을 수립하여, IP기업투자 및 직접투자 시장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
 - 국내 초기 IP직접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IP활용률을 제고하고 핵심기술IP의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연구의 활용방안)** 국내외 IP직접투자 펀드 및 시장 상세 분석을 통해, 향후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 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
 - 국내 IP직접투자 시장 활성화 선결과제 분석을 통해, 향후 민간자금 중심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과제 마련

3 연구범위 및 연구체계

-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IP직접투자펀드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용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IP직접투자 펀드의 적정 필요규모 분석)** 미국 IP직접투자펀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국내 필요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정책자금으로서 조성되어야 하는 IP직접투자펀드금액을 추정
- **(펀드조성활성화 방안 및 운용효율화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보호를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개선방안을 마련
- **(연구 추진체계)**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2장

IP금융과 IP투자

1. IP금융 개념 및 IP투자유형
2. IP투자의 필요성



제2장 | IP금융과 IP투자

1 IP금융 개념 및 IP투자유형

- (IP금융개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업성장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의미
- IP 소유자인 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수익을 생성하는 비즈니스 활동도 넓은 범위에서의 IP금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IP금융은 기본적으로 기업자체 신용도와 별도로 지재권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군(Asset Class)으로써 활용하는 방식임.

〈IP금융과 기술금융의 차이〉

- IP금융과 기술금융을 법적인 맥락에서 보면, 기술은 특허나 영업비밀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기술금융은 IP금융의 상위개념으로도 볼 수 있음
- 기술금융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자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IP금융의 경우 재산권인 특허권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됨
- IP금융은 등록/거래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기술대비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음

〈기술금융 Vs. IP금융〉

구분	소관부처	평가항목	평가기간	평가기관	평가비용
기술금융	금융위	기술신용등급	5-10일	TCB기관 (6개)	50-75만원
IP 금융	특허청	IP가치평가	3-6주	평가기관* (22개)	500-1500만원 (특허청 일부지원)

*평가기관: 특허법인, TCB, IP서비스기관, 공공기관으로 총 22개의 평가기관

**출처: 금융위, 특허청('18),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수정보완

- **(IP금융 유형)** IP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의 유형은 크게 지분(Equity)투자하거나 IP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 자금조달 방식**과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Debt) 중심의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음
- 국내 IP금융시장은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IP담보대출, IP보증, IP투자의 형태로 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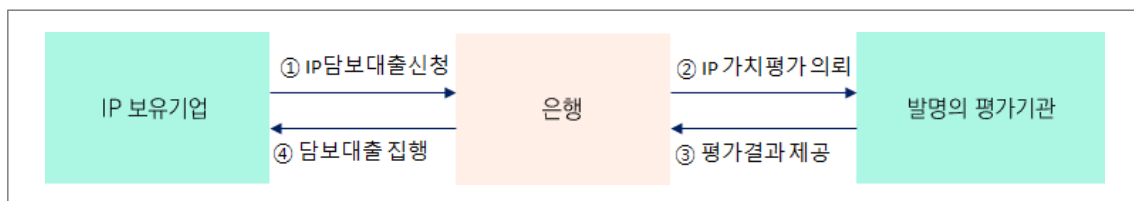
〈IP금융 유형〉

IP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은행이 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IP보증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 실행
IP투자	투자기관이 우수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 실시

※ 출처: '혁신 마중물' 지식재산 금융 잔액 8조원 눈앞(특허청, 23.04.27)

- **IP 담보대출(IP-backed loans):** IP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재권에 대한 담보권을 기초로 대출을 해주는 융자형 자금조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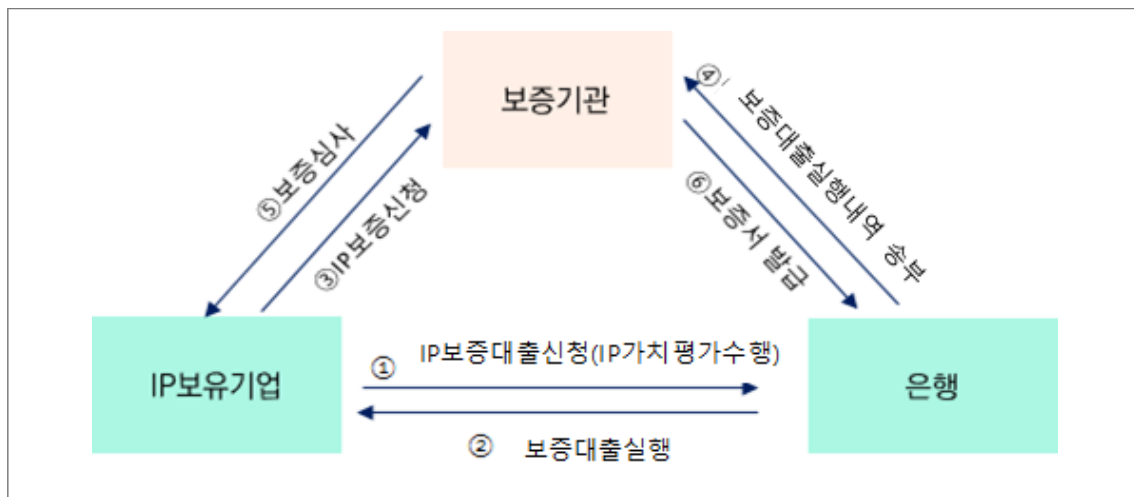
〈IP담보대출(IP backed loans)의 구조〉



-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행하고 가치평가결과에 따른 특허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액이 결정되어 대출이 실행 되는 방식으로 진행
- 무형재산권인 IP자산에 기반한 담보대출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담보로 제공된 지 재권을 용이하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IP거래시장이 제한적이며, 담보권을 확보한 후에도 소송 등에 의해 특허와 같은 지재권이 무효화될 위험성이 있음
- **IP 보증(loans guaranteed by IP):** IP보증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 실행하는 방식

- 기업이 보증기관에 IP 가치평가 보증을 신청하고, 신청 기업의 IP 가치 평가를 진행한 후, 보증기관에서 IP 가치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

〈IP보증(loans guaranteed by IP)의 구조〉



○ **IP투자(IP Investment)**: 투자기관이 우수 IP 보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IP 자체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것

- 현재 국내 IP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IP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IP 보유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진행
- 국내에서는 아직 소규모이기는 하나,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NPE 등의 주도하에 기업이 보유한 IP에 투자하여 수익화하고 있음
 - ※ KB인베스트먼트는 '15년 지식재산펀드 1호를 결성, 투자했던 미코바이오메드의 '20년 코스닥 상장으로 15억원을 투자해 85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냄
- 투자상품의 유형으로는 IP매각 후 재실시(IP sales and License Back), IP유동화(IP royalty securitization),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이 높은 미국 등에서의 소송 수익에 기반한 IP투자상품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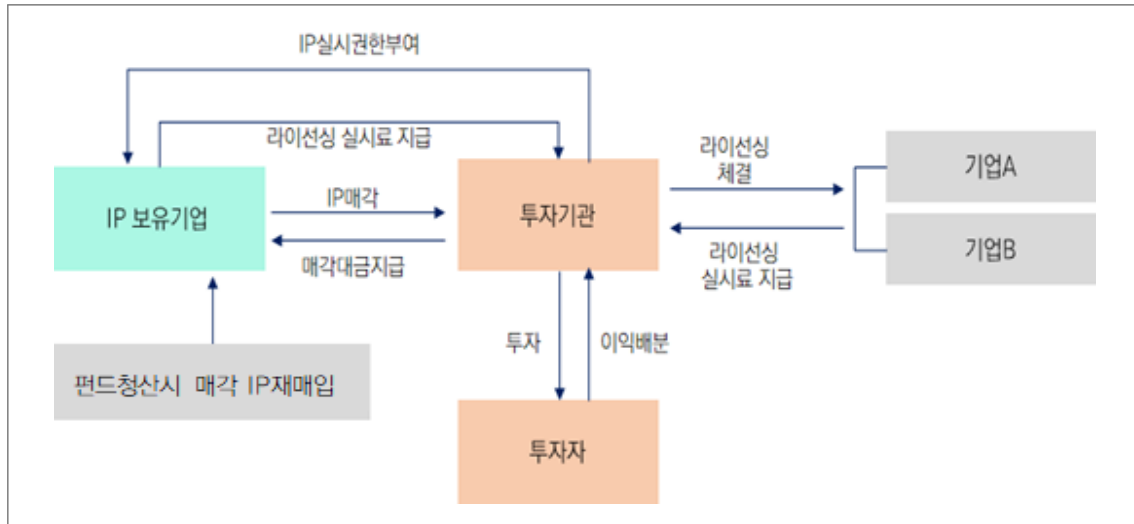
□ **(IP투자 비즈니스모델)³⁾** IP투자에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IP 매각 후 재실시(IP sales and License Back), IP유동화(IP royalty securitization), 소송 기반 IP투자(IP Litigation Fund)등이 있음

3) 이장에서 다루는 IP 금융의 유형은 일반적인 논의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 이는 국가마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법과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임

○ IP 매각 후 재실시(IP sales and license back): IP자산 보유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지재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실시권을 확보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금융기법

※ 매각 후 재실시(Sales and licence back)이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금융 기법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을 구매자에게 팔고 바로 임차함. 이를 통해 원래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묶여있던 유동성을 현금화

〈IP매각 후 재실시(IP sales and license back)의 구조〉



- 자금을 제공하는 펀드가 기업의 지재권을 매입 후, 당해 기업에게 다시 실시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가 되면 해당기업에 지재권을 재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금융방식
- IP매각 후 재실시 방식은 IP에 대한 실시권은 유지하면서 당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사례)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이 아이디어브릿지를 통해 코데즈컴바인과 상표권에 대해 SLB계약을 체결(13년), 코데즈컴바인이 보유한 핵심상표권 88개(외부기관평가액 390억원)중 10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에 매각하고 1년간 일정비율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 이후 코데즈컴바인이 재매입을 완료⁴⁾

○ IP유동화(IP royalty securitization): IP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로열티⁵⁾ 수입을 증권화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IP소유자는 미래에 받을 로열티를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음

4) 산은 '코데즈컴바인' 상표권에 100억 투자(아시아경제, 23.04.23)

<https://cm.asiae.co.kr/article/2013042315362803824>

5) 로열티는 라이선스 사용료나 저작물 사용료 등 IP(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의미함.

〈IP유동화(IP royalty securitization)〉



- 기업은 먼저 로열티 수입권을 이전받을 SPV(특별 목적 법인)*를 설립하고 설립된 SPV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이 증권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기업이 조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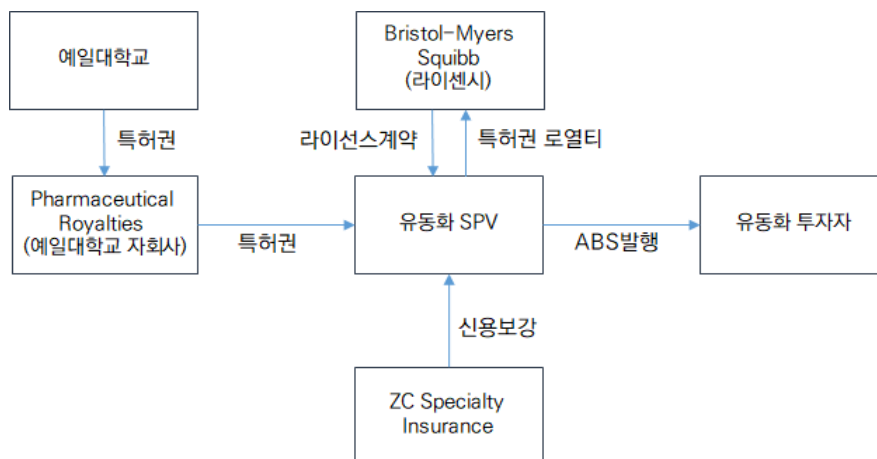
* SPV(Special Purpose Vehicle)이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회사로, 특정사업에 대한 투자. 운영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준점, 자금통로, 손익의 결산단위(도관체)의 역할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 후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게 되며 모기업과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이 라이선스 계약이나 판매를 통해 로열티를 발생시키면, 이 수익은 SPV로 이동하고 SPV는 이 수익을 사용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됨

〈IP유동화의 사례〉

예일대학교 에이즈치료 특허권 장래 로열티 유동화

- 예일대학교는 보유 특허권을 SPV에 양도하고, SPV는 계약을 Bristol-Myers Squibb와 해당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발생이 기대되는 장래 로열티 현금흐름을 유동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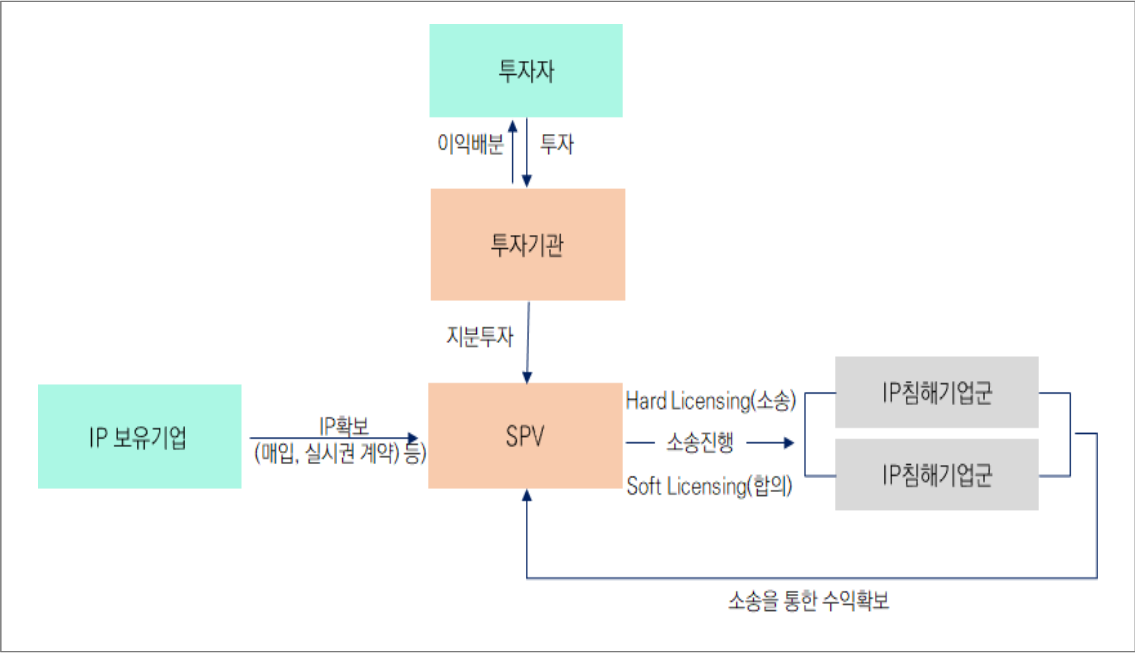


- 유동화 초기에는 초과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로열티가 급격히 줄어들며 유동화는 조기 종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Pooling의 필요성을 제기

* 출처: IP유동화 평가방법론('18. 1.8), SCR 서울신용평가(주)

- 소송기반 IP펀드(IP litigation fund): litigation funding 또는 Third-party Funding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제반 지출을 소송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판, 합의 등을 거쳐 발생하는 판결 배상액 내지는 화해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투자
- Target IP확보 및 추가IP 보강 후 IP침해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송에 대한 배상 또는 합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

〈소송기반 IP펀드(IP litigation fund)의 구조〉



2 IP투자의 필요성

□ (자금 확보) IP투자유치를 통해 재무적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훌륭한 기술을 지닌 기업이 IP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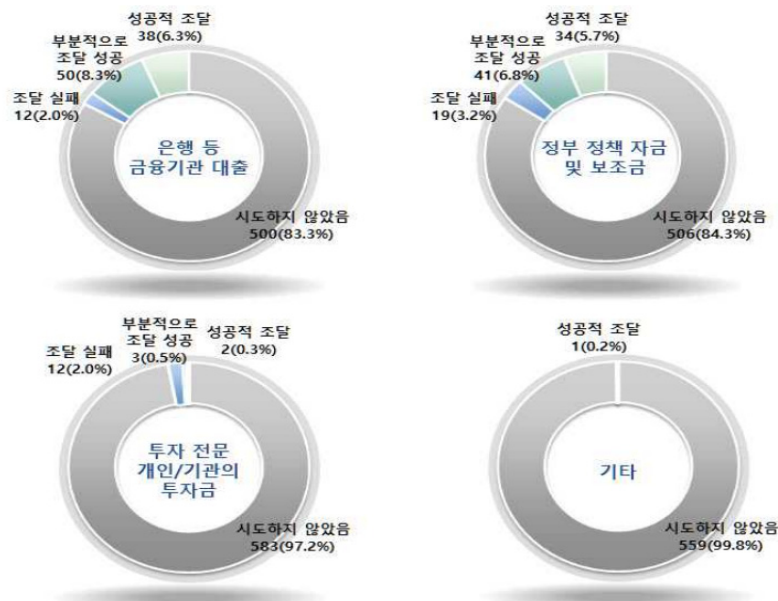
○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 요소인 IP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 IP자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조달

- 기업이 자금을 조달 받을 때 IP의 가치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 특히, 기술집약형 혁신기업으로 사업화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수 IP보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사례) 이어폰 특허기술 관련 기술을 보유한 G사는 우수한 IP(국내특허 8건, 해외특허 4건)를 보유했음에도 창업 초기 Death Valley 상태로 인해 지분투자 유치 실패했으나, '15년 아이디어브릿지가 5억원 투자, 17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M&A)를 통해 전액 상환(연 5% 수익)하였음⁶⁾

〈한국 중소기업의 IP를 활용한 자금조달경험〉



6) “좋은 특허, 그리고 현금 흐름” (전자신문, '17.8.29) <https://www.etnews.com/20170829000050>

- 자금 조달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던 유형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었으며 이것도 전체 기업의 16.7%에 불과
- 83% 이상의 중소기업이 IP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IP 투자 유치의 경우도 97%가 시도해보지 않음

* 출처: 이노비즈협회('21.08), 중소기업 R&D, IP 활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고서

- **(IP투자시장 활성화) 특히, IP직접투자는 다양한 IP투자 상품의 수익화를 통해 IP투자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
- IP직접투자는 새로운 IP활용 체계를 구축, 신규 IP투자영역의 개척함으로써 다양한 IP 투자 상품으로 민간투자자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

제3장

국내 IP투자 현황

1. 국내 IP금융 현황
2. IP투자 성공사례



제3장 | 국내 IP투자 현황

1 국내 IP금융 현황

가. IP금융 정책 동향 및 성과

□ 국내 IP금융은 '13년 기술금융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IP금융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성장해 옴

○ IP 자체가 투자 및 거래의 대상이며 자본시장에서 특허권을 구성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13년 IP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가 신설되고 IP펀드가 조성됨

○ '18년에는 IP보증 강화 및 펀드 투자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포함하였으며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우수 IP기업 발굴 노력 강화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함

* 출처: 금융위, 특허청('18.12),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 IP투자규모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의 IP투자 확대, IP투자 고도화 및 다양화, IP자산기반 유동화증권투자, IP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도출
-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정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정책자금에 의한 IP의 점진적 확대, 부처간 공동으로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펀드간 연계 강화
- IP프로젝트 투자강화, IP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형 금융으로 SLB등의 투자 모델 확산, 상표 및 디자인권으로 IP금융대상 확대
-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IP유동화 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
- VC펀드의 IP소유 허용, 가치평가 대상에 출원중 특허 포함, 프로젝트 투자에 해외특허도 포함하는 등 IP투자 저해요인 개선

○ '20년에는 IP 기반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IP자체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함

-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은 IP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저변 마련의 4대 전략으로 구성 전략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 (IP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투자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 대학·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 해외출원 펀드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하여 수익성을 제고
 -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IP 투자 전용펀드를 신설, 클라우드펀딩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을 출시
 -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IP 투자에 적용하고, 신탁회사 등이 보유한 IP의 연차등록료 감면 추진, 지식재산 질권 담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은행 부담을 완화
 -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저변 마련) IP 투자 종합상담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조성, 지식재산 금융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 '23년에는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IP활용 생태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확대”를 제시하고 ①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과 ②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 출처: '23.3.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 (수요자 중심의 IP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IP금융과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우대 방안을 부여함,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지원비율에 더하여 5%p의 추가 우대
 - IP 가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담보·보증·투자의 결합 지원으로 IP금융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 제시
 - 회수지원기구가 우수 IP를 보유한 회생기업 및 IP 담보대출 수혜 기업을 유암코⁷⁾에 추천하는 투자 연계 시스템을 구축
 -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확대 방안) 지식재산 투자,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출자금을 확대, 투자회수금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의 모태펀드 출자금 예산 확대를 '24년부터 추진

7) 유암코(UAMCO) :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회생계획안 인가 후 기업의 채권인수 및 추가적인 투자(기업당 100억원 이상)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

- IP펀드와 기술금융 및 사업화 펀드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을 추진(예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펀드,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펀드 등)
-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확대를 위해 지역기업 투자를 확대할 것이 제시,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된 IP투자를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일정 투자의무 부여 등을 고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지역기업 투자 비중 21.0% 수준이었는데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

□ 정부차원의 IP금융정책의 노력으로 국내 IP 금융은 '19년 이후 지속하여 성장해오고 있음

○ '22년 IP 금융 잔액은 7조 7,835억원을 넘어섰고, '22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905억 원으로 나타남

- 신규공급 기준으로는 총 3조 905억원이 공급되었고, IP투자는 1조 2,968억원, IP담보대출은 9,156억원, IP보증은 8,781억원이 공급됨

〈 IP금융유형별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IP투자	1,933	2,621	6,088	12,968
			(8,628)	(19,331)
IP담보대출	4,331	10,930	10,508	9,156
			(19,315)	(21,929)
IP보증	7,240	7,089	8,445	8,781
			(32,147)	(36,575)
합 계	13,504	20,640	25,041	30,905
			(60,090)	(77,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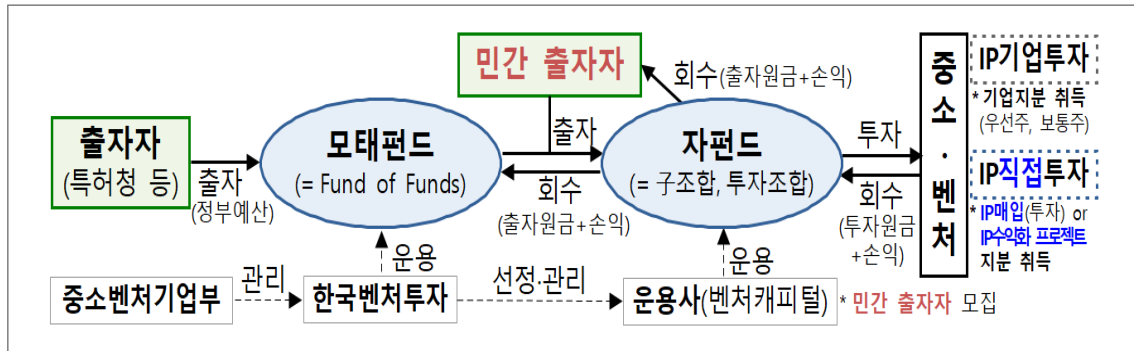
* 신규공급 기준 수치이며, '21년 및 '22년 괄호 부분은 잔액 기준 IP금융 규모

**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혁신 마중물' 지식재산 금융 잔액 8조원 눈앞('23.4.27)

나. 국내 IP투자 현황

- 현재 국내 IP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IP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IP 보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모태펀드 특허계정) 공급자 위주의 투자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 재순환 방식의 안정적인 벤처투자재원 마련
- 특허청은 '19년까지는 IP가치평가에 기반한 IP기업투자 펀드를, '20년부터는 IP 자체에 투자하는 IP직접투자 펀드를 조성·운영

〈모태펀드 추진체계〉



- 특허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재산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및 우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모태조합 특허계정을 출자*

* 투자대상 : 우수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 IP서비스기업 및 IP수익화 프로젝트 등

** 운용사(GP) :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 / (개별투자조합) 벤처캐피털 등

*** 사업예산 : 총2,500억원('06 ~ '23년 누적)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단위 : 백만원)

구분	'06 예산	'07 예산	'09 예산	'15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예산 (A)	'23예산 (B)	증감 (B-A)	%
모태조합 출자	55,000	55,000	33,000	17,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	△20,000	△100.0

※ '23년 특허계정 출자 : 정부예산 0원 + 회수금 300억원 = 총300억원 출자

- 국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방식은 기업투자와 프로젝트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IP 기업투자는 IP가치평가를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라이선싱 등 수익창출을 위해 특허 자체의 매입·활용에 투자하면 IP직접투자라고 함

* IP직접투자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운영 (벤처투자법§2제1호다목)

〈 벤처투자법(§2조제1호)상 중소·벤처기업 투자 방식 〉

구분	세부 내용
기업투자 (IP기업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등을 통한 기업의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 투자 (IP직접투자)	①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②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 일반적 기업지분(주식) 취득이 아닌, 기술개발 등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 **(IP기업투자)** 우수한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IP가치평가를 통해 IP기반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
 - 기업이 핵심기술을 IP로 권리화함에 따라, 단순 신용도 등이 아닌 제대로 된 **IP가치 평가로 사업화 자금 조달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 IP와 더불어 기업 신용도, 성장성 및 기술 차별성도 같이 평가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 위험도가 낮은 장점이 있음
- **(IP직접투자)** IP에 직접 투자하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직접 특허를 매입(전용실시 계약 체결 등)하여 **라이선싱과 소송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투자
 - 기업은 라이선싱 실시료*나 소송**을 통한 배상액(합의금)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 SLB 펀드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IP가 가진 고유특성인 전용실시권 제도의 강점을 살려 특허에 대한 독점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상실시권으로 추가수익 창출 가능
 - ** IP소송투자의 상승 잠재력을 통한 수익 극대화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요구를 충족

○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분야 및 투자 대상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요 출자분야 및 주목적 투자 대상(최근 3년)〉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출자규모	비고
특허기술 사업화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① 투자 전 해당 사업화관련 특허1)를 대상으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며, ②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는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 대응에 사용되어야 함 - 단, IP세컨더리 또는 IP서비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가능	출자예산: 125억원 결성목표액: 209억원	'23년 8월수시
특허기술 사업화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① 투자 전 해당 사업화관련 특허1)를 대상으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며, ②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는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 대응에 사용되어야 함 - 단, IP세컨더리 또는 IP서비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가능	출자예산: 175억원 결성목표액: 292억원	'23년 5월수시
IP 직접투자	•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건수 비중이 30% 이상인 수익화 프로젝트로서, 이들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것이어야 함 ※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 건수 비중이 50% 이상인 수익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최소 10% 이상 투자되어야 하며, 상표·디자인권에는 약정총액의 최대 10%까지만 투자 가능함 ※ IP프로젝트 투자의 동일 프로젝트 당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30%까지 가능	출자예산: 360억원 결성액: 602억원	'22년 8월수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출자규모	비고
IP기반 지역기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IP서비스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①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되어야 하고, ②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함 (IP서비스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IP서비스기업 : 지식재산(IP)과 관련한 정보의 조사·분석·번역 및 시스템·소프트웨어·데이터구축,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거래·중개·관리 및 교육·홍보, 지식재산 경영·사업화 전략의 수립·자문·컨설팅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출자예산: 225억원 결성액: 398억원	'22년 8월수시
IP기반 창업기업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초기창업자*, IP서비스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하되, 초기창업자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기업 ※ 단, ①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되어야 하고, ②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함 (IP서비스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출자예산: 90억원 결성액: 156.5억원	'22년 2차정시
IP 직접투자	•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50%이상 투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투자. 단, 상표·디자인권에는 약정총액의 1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비중이 30% 이상인 수익화 프로젝트에만 투자 가능 ** IP프로젝트투자의 동일 프로젝트 당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30%까지 가능	출자예산: 300억원 결성액: 504억원	'21년 8월수시
IP 클라우드 펀딩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단,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거나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클라우드 펀딩** 진행 예정****인 IP보유(국내·외 등록 특허 1건 이상)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IP프로젝트에 10% 이상 투자 ※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에는 제외하며, IP프로젝트 투자 시에는 선택사항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 단, IP프로젝트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중 우리나라(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 건수가 30% 이상이어야 함 ** 한국클라우드펀딩협회 회원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경우로 한정 ***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으로 등록 목표금액의 80% 이상 달성한 경우 ****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클라우드 펀딩 미진행 시 의무투자 달성실적에서 제외	출자예산: 75억원 결성액: 140억원	'21년 3차정시
공공 IP사업화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 단,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IP출원지원***에 약정총액의 4% 이상 투자하고,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	출자예산: 185억원 결성액: 487.5억원	'20년 2차정시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출자규모	비고
	**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았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전받을 기업 *** 출원·등록료, 대리비용, 특허 매입·라이선스 비용, 특허전략·보호 컨설팅 등		
IP기반스 타트업 육성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단, 지방 스타트업*에 60% 이상 투자하며, 기업당 투자금의 일부(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 * 본사 등 주요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1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중이거나 보유한 기업	출자예산: 50억원 결성액: 90억원	’20년 2차정시
IP 직접투자	•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이상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 70% 초과 수익화 프로젝트 투자 불가 ※ IP프로젝트투자 동일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30%	출자예산: 240억원 결성액: 407억원	’20년 9월 수시

-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요성과)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기업은 코스닥 등 기업상장(IPO) 효과 및 유니콘 기업 배출(5개사) 등에서 효과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요 성과〉

구분	세부 내역
기업상장 (IPO)효과	• 모태펀드 전체계정(奎부처) 대비 특허계정의 정부예산 1천억원당 상장(IPO) 기업수는 8배(특허 39.6개), 투자기업당 상장률은 2배(특허 12%) * 정부예산 1천억원당 상장기업수(∼’21년) : (특허) 39.6개 / (모태전체) 4.9개 ** 투자기업수당 상장률 (∼’22.7월, 한국벤처투자) : (특허) 12% / (모태전체) 6%
유니콘 기업	• 크래프톤, 직방, 버킷플레이스, 쏘카 등 5개社 (韓 역대 총 34개社) *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CES 2023	(주)닷, (주)메디웨일, (주)와따, (주)망고슬레브 등 9개社 혁신상 수상

다. IP직접투자펀드 현황

- (IP직접투자펀드 조성) ’19년까지는 IP가치평가에 기반한 IP기업투자 펀드만을, ’20년부터는 IP 자체에 투자하는 IP직접투자 펀드도 조성·운영, 총 1,513억원 규모*

*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목표 : 3천억원(IP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20.7월)

**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현황(모태펀드) : (’20) 407억원 → (’21) 504억원 → (’22) 602억원 → (’23) 0원

※ 「IP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20.7월)에 따른 조성 목표가 3천억원(’20∼’24년)이지만 ’23년 IP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여 목표 달성이 불확실

〈모태펀드 특허계정 IP직접투자 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출자연도	운용사		모태펀드	민간	규모
'20년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PEF	240	167	407
'21년	아이디벤처스	VC	160	110	270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자산운용사	140	94	234
'22년*	케이그라운드벤처스	VC	180	122	302
	연세대학교기술지주	엑셀러레이터	180	120	300
계			900	613	1,513

- (IP직접투자 펀드 주목적투자대상) IP직접투자 시 프로젝트에 국내출원 IP건수 비중* 조건 부여

* 우리나라 특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출자계획상 우리나라 IP건수 비중 조건을 부여

구분	IP직접투자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모태펀드 출자 / 결성목표액)
비중	-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360억/600억)
대상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IP건수 비중이 30% 이상인 수익화 프로젝트 - 이들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것
조건	- 국내출원 IP건수 비중이 50% 이상인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10% 이상 투자 - 상표·디자인권에는 약정총액의 10%까지만 투자 가능 - IP프로젝트 투자의 동일 프로젝트 당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30%까지 가능

라. IP투자주체로서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장

- NPE 비즈니스가 부상함에 따라 대학기술지주회사*의 IP투자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

* 대학기술지주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하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해 수익창출까지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음
- 창업기획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107개 대학이 참여해 81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 중이며 대학기술지주가 결성한 펀드는 64개에 달함
 - 이 중 서울대/연세대 결성 펀드는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조성되었음
 - 특허계정 자펀드 중 기술지주가 GP로 참여한 펀드는 서울대 STH IP 개인투자조합, 충남대-로우 아이비(IP)기반 창업기업 투자조합, 서울대 STH IP창업 개인투자조합, 연세대학교기술지주 IP펀드로 총 4개 펀드임

〈주요 대학기술지주회사 IP펀드 결성 현황〉

	펀드명	결성금액	등록일	주요내용
서울대 기술지주	서울대 STH IP개인투자조합	90억원	2020.8	특허기술을 보유한 지방소재 스타트업 중심투자
연세대 기술지주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IP펀드	300억원	2023.7	IP직접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고려대 기술지주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촉진 개인투자조합 1호	50억원	2019.8	정부R&D성공판정 기업 또는 공공기술 이전 기업에 70%이상 투자

출처: 창업기획자(2023.7)

- (서울대기술지주) '20년 '서울대 STH IP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23년에 '서울대 STH IP창업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 90억원 규모의 IP 개인투자조합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중 특허기술을 보유한 지방 소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
- (연세대기술지주) '23년 300억원 규모 '연세대학교기술지주 IP펀드'를 결성, 한국벤처 투자 수시출자사업(특허계정)에 선정돼 모태펀드 180억원을 출자받음
 - 약정 총액 40%는 딥테크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60%는 IP 프로젝트에 투자
 - IP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수익화를 추구
 - 특허를 인수해 기업에 다시 대여하고, 보유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는 등 IP를 기반으로 수익에 나설 계획
- (고려대기술지주) 정부로부터 R&D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술 이전 기업에 투자하는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개인투자조합 제1호'를 2019년에 결성

2 IP투자 성공사례

가. IP직접투자를 통한 IP수익화사례

- (Wi-Fi Calling) IP수익화 기업인 I社는 '15년도 KAIST로부터 2억원에 '와이파이 콜링' 특허 매입*

* 당초 해외특허 유지료 부담 등으로 KAIST에서 클렌징(소멸)하려던 특허를 매입

- 와이파이(Wi-Fi) 접속을 통해 무선통신과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 기지국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미국 등 거주지 집적도가 낮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US6922728B2 1건, '02년 미국 특허청 등록)



○ (수익화) 美 1~3위 통신사 상대 총 550억원 규모 수익 창출(~'22년)

- 美 이동통신사 AT&T 대상 135억원('20. 9월), T-mobile 115억원, Verizon 90억원 (~'21년) 등 1~3위 통신사 대상 350억원 수익 창출

* 수익의 10%를 KAIST에 배분하고, 그중 일부(약 50%)는 발명자인 조동호 교수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배분 ⇒ 추가 라이선싱 등을 통해 '22년까지 누적 550억원 규모 수익 확보

- (USB 특허) I社는 '15년도에 하나마이크론(국내 중소기업)의 USB 메모리 패밀리 특허 일체를 6억원에 매입·소송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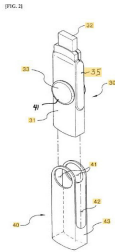
* 당초 하나마이크론社는 美 USB 메모리 선두 업체인 킹스톤社의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라이선싱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특허침해소송 제기('12년도)

** 킹스톤社는 특허무효 소송과 협상 무시로 일관, 수익화에 난항을 겪음
(美 킹스톤社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07년도부터 출시)

- 일체형 회전 덮개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특허

* US6926544B2 등 해당 특허를 '02년도에 국내외 출원 (KR·US·CN·JP·DE·FR·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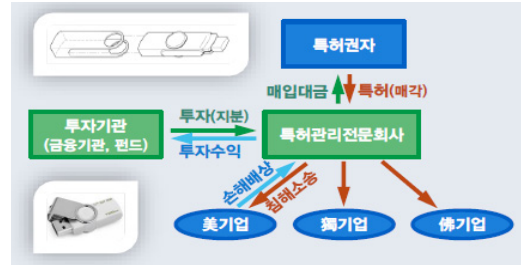
〈USB특허〉



〈킹스톤社 판매제품〉



〈ID社의 특허 수익화 모델〉



○ (수익화) 美 킹스톤社 대상 181억원 규모 수익 창출(~'21. 3월)

- 소송 결과, 750만 달러 배상판결('20. 3월), 이후 고의침해에 인정에 따른 1,127만달러 (1.5배) 배상판결('21. 3월)을 이끌어냄

* 국내 K인프라자산운용은 15억원 투자, 30억원 이상의 수익 배분 예정 ⇒ 이자·세금 등 포함시 총 1,600만달러(약 181억원)의 수익 창출

나. 국내외 대학의 IP수익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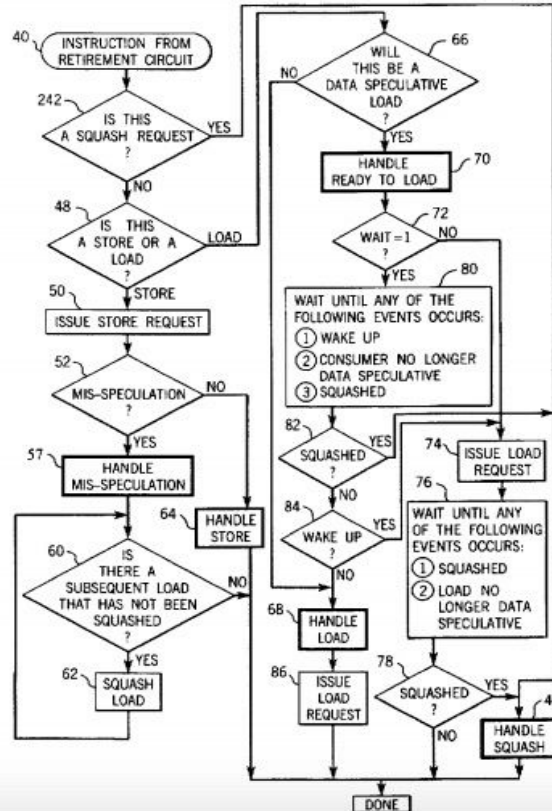
□ 국내외대학의 IP 수익화 사례

구분	년도	대학(원고)	기업(피고)	판결액(합의금)
해외대학	2015년	위스콘신대	애플	2억 3400만달러 ('17년 위스콘신 연방법원 판결)
	2016년	CALTECH	애플, 브로드컴	애플-8억 3780만 달러, 브로드컴-2억 7020만 달러 ('20년 LA법원판결 결과로 최종 합의금은 미공개)
	2016년	카네기멜론대	Marvell	7억 5천만달러('16년에 합의)
	2022년	콜롬비아대	NortonLifeLock	1억 8500만 달러('22년 버지니아법원 판결)
국내대학	2016년	카이스트	삼성전자, 애플, 인텔	2,367억원
	2016년	성균관대	Carl Zeiss Vision등 8개	미공개
	2021년		핀터레스	진행 중

□ (위스콘신대) 미국 위스콘신대동문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은 지난 '98년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의 효율을 높이는 병렬처리 컴퓨터를 위한 테이블 기반 데이터 예측회로 특허를 냈으며,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14년 1월 소송을 제기함

병렬처리 컴퓨터를 위한 테이블 기반 데이터 예측회로 기술

애플이 침해한 WARF의 특허기술은 ‘테이블 기반 병행처리컴퓨터용 데이터 추정회로(미특허 5,781,752호)’로 1998년 구린다 소히 박사가 이끄는 위스콘신대연구팀이 특허를 확보한 기술



WARF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 문건에는 “예측 회로가 이전에 실행한 명령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좀 더 향상된 명령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고 되어 있음

- (위스콘신대 vs 애플) 애플은 쟁점이 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 특허청은 '15년 4월 '752 특허권은 유효하다'면서 애플의 청원을 기각하면서 본격적인 특허침해 공방을 벌였음

*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아이폰5S와 6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사용된 A7, A8, A8X 칩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집중 조사

-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 3천 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정함
-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항소

- (수익화) '17년 7월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초기 판결('15년) 당시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면서, 이번에는 초기 판결 당시의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음
 - 한편, WARF 측은 당초 8억6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음
- (CALTECH)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은 2016년 애플의 주력 제품 아이폰 등에 사용된 브로드컴의 Wi-Fi 칩이 자신들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CALTECH vs 애플, 브로드컴) '20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이루어진 1심에서 칼텍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배심원단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애플에게 8억 3780만 달러, 브로드컴에게 2억 70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옴
 - 하지만 애플과 브로드컴은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액의 재산정을 위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
 - 애플과 브로드컴은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된 주장을 했으나, 해당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였음
 - (수익화) '23년 CALTECH과 애플 및 브로드컴 간 합의하기로 결정, 합의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카네기멜론대) '09년 3월, 미국 카네기멜론대(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는 Marvell(Marvell Technology Group)사가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함
 - * 카네기 멜론 대학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상관 감응 적응형 계열 검출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과 “ISI 메모리 채널의 소프트 / 하드 순서 검지”에 관한 2건(미국 특허 번호는 각각 6,201,839 (2001년 획득), 6,438,180(2002년 획득))
 - (카네기멜론대 vs Marvell) '12년 12월,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Marvell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CMU에게 11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동 법원 판사는 소송기간 지연 및 고의 침해를 반영하여 15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함
 - 이에 불복한 Marvell사는 항소하였고, 2015년 8월 CAFC는 Marvell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CMU에게 최소한 2억 7,840만 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판매되는 것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리를 명함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Marvell社의 특허제품의 생산·판매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일부만 미국으로 수입되었음. Marvell社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익화) '16년 2월 17일, 미국 Marvell社는 CMU에 7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거의 7년간 지속되었던 특허분쟁을 종결함
- (컬럼비아대) '13년 미국 컬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는 Norton(구 Symantec)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및 기타 보안 제품이 침입 탐지 시스템(intrusion-detection systems)과 관련된 6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NortonLifeLock Inc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컬럼비아 vs NortonLifeLock Inc) 버지니아 연방법원 배심원은 '22년 5월 NortonLifeLock Inc가 컬럼비아대의 특허 권리를 침해하여 1억 8,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Norton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가 확인되어 컬럼비아대에게 최대 5억 5,500만 달러까지 지불될 가능성이 있음
- (카이스트) '16년 카이스트는 삼성전자,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에게 핀펫(FinFET) 기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반면 미국 인텔은 카이스트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
 - * 핀펫은 초미세 반도체 트랜지스터 기술로,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원광대에서 근무하면서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는 2001년에 한국과 미국에서 취득되었으며, 2012년부터 카이스트 IP가 해당 특허를 관리하고 있음
- (카이스트 vs 삼성전자, 퀄컴, 글로벌파운드리) '18년 6월에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액이 4억달러(4735억원)에 이른다는 평결을 내리고 '19년 2월 카이스트 IP는 삼성에 다시 특허소송을 제기
 - 배심원단 평결에도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설계, 개발, 상업화를 하고 있다고 카이스트 측은 지적
 - * 당시 14, 11, 10, 8, 7나노(nm) 벌크 핀펫 기술과 모바일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9시리즈 등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명기
 - '16년 첫 특허침해 소송 이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갤럭시 S8·S8액티브·S8플러스·S9·S9플러스·노트8·노트9)도 모두 포함됐음

- (수익화) '20년 2월 법원은 1심에서 삼성전자에게 KAIST에게 2억달러(23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4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카이스트(KAIST) IP의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이 합의로 끝을 맺었음
 - 양측은 소송 합의 종결에 따라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음

제4장

주요국 IP투자현황

1. 미국
2. 중국
3. 유럽
4. 일본



제4장 | 주요국 IP투자현황

1 미국

□ 미국은 IP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민간이 IP금융의 성장을 주도하였음

- 미국은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운용하는 다양한 IP펀드가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IP 소송, M&A 등의 투자금융 모델이 발달함
 - * NPE(Non Practicing Entity): 제품의 생산 판매없이 특허 창출 거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특허관리전문회사라고도 함
- 여기에는 미국의 시장규모가 크고 IP권리 보장 수준이 높으며, 신탁금융 등 IP 사업화 금융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높은 인식 등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함.

가. IP금융의 발전

□ 미국의 IP금융은 '80년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NPE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음

-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가 '80년에 제정되면서 기술사업화 시장의 성장 기초가 되어, 같은 해 제정된 Bayh-Dole Act는 연방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특허권도 참여 중소기업 및 대학, 비영리기관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함
 - * 연방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법적 책임 규정으로 연방연구기관이 R&D 예산의 0.5% 이상을 기술이전 활동에 지출하도록 명시
- '90년대 이후에는 NPE가 주도하는 IP 수익화가 이루어짐
 - NPE는 특허권 소송, IP 증권화, IP매각후 재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IP를 수익화하는 사업 및 금융 모델을 구현하고 있음
 - 특히, '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의 특허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며 성장하였는데, 인수한 특허권은 사용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었음

〈초기 IP를 통한 자금 확보 사례:코닥〉

- 사진 필름 대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인쇄 기술의 응용이나 인쇄물의 디지털화 등을 수행하는 코닥사(Eastman Kodak)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
- '12년 미국 본사와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조의 적용을 신청했을 때도, 그 목표로서 현금 유동성 강화, 부채 정리, 전략적 지식재산의 수익화를 목표로 함
- 같은 해에 특허권의 경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구글, 애플, 후지필름 등 12개 회사에 총 미화 5.27억 달러에 판매함. 방식은 펀드가 권리를 보유하고, 12개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함

- IP 유동화 증권 발생은 '8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기업의 특허권, 상표권을 활용하였음. 유동화 증권 발생 규모는 '90년대에는 400만달러였으며 '00년도에는 20.4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로 자산유동화 시장 침체로 감소함

나. IP투자시장 현황

- **(투자 대상으로서 IP)**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하고 IP를 활용한 창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미국은 IP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더욱이,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금융자산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대안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점차 더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IP투자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음
- 특히, 특허권에 특화된 투자 펀드가 등장하며 다양한 특허권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투자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단일 특허권에 대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더 넓은 범위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고 있음

- **(특허권 거래시장)** 특허 거래 시장은 기업 간의 특허권 거래, 특허 소송을 목적으로 한 거래, 그리고 특허권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의한 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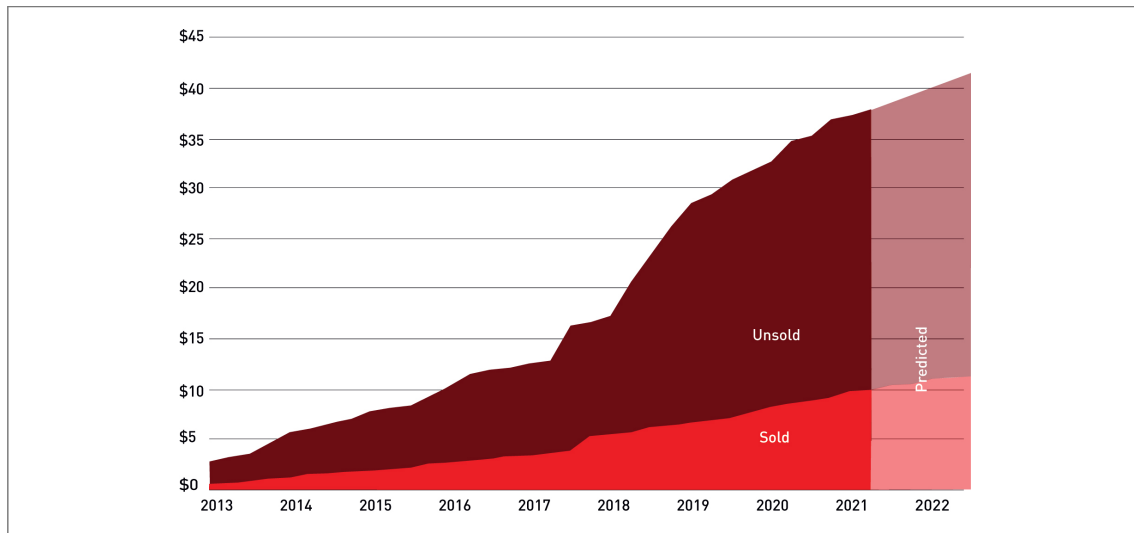
- 특허권거래시장에서 NPE에 의한 특허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NPE는 특허를 번들로 구매하여 특허 라이선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금융 사업의 목표로 하는 특허 구매자(financial buyer)로 성장하고 있음
- (시장 동향) 특허 거래 시장은 참여자들의 활발한 거래와 법률 및 규제 정비로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특허 가격의 안정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IP) 거래를 위한 절차, 법률, 그리고 제도의 간소화로 거래 비용과 시간이 축소되는 등 거래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

식재산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21년에 특허 중개 브로커에 의해 시장에 제안된 가격 총액은 380억달러에 달했으며 같은 해 104억달러의 특허가 판매되어 전년대비 40억 달러이상 증가함

〈특허중개인에 의한 특허거래시장〉

(단위: 10억 달러)



주 1. 약 13,000건의 특허거래를 통해 25만이상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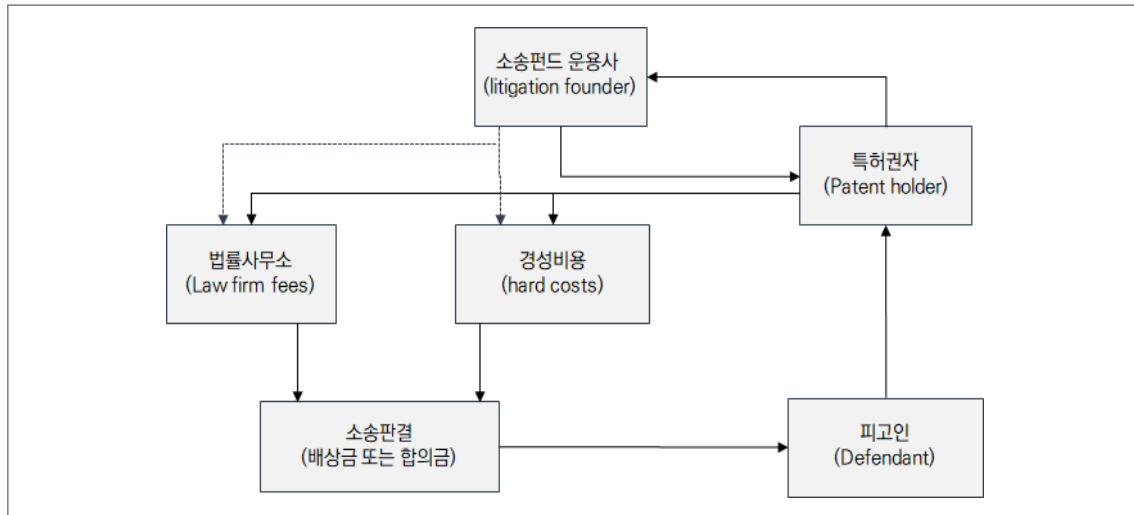
* 출처: Richardson Oliver Insights (ROI)(2021) 조사 결과

다. IP투자펀드 유형 및 방식

- (특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펀드, 채권펀드와 같이 다수의 특허권을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펀드로, 보유한 특허권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펀드 수익률로 함
- **(특허소송형)** 특허권에 관한 소송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특허소송 자금조달 방식을 채택, 그중 특허소송 금융조달 (patent litigation financing)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형태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타사가 제조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노하우 등이 펀드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 무단 실시로 소송을 제기
 -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특허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
 - 특허소송에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도 제조기반 기업 등과 계약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허권을 펀드로 보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 소송에 휘말릴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라이선스형의 일종으로 볼수도 있음

- (투자방식) 특허소송펀드는 소송자금투자자(litigation funder) 특허권자(patent holder)나 법률사무소(law firm)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
 -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자금 제공자는 특허권자나 법률사무소가 얻은 소송의 수익을 통해 보상

〈특허소송 자금조달 자금 흐름도〉



* 출처: <https://www.iam-media.com/>

- (사례) Burford Capital은 IP소송 관련 프로젝트로 '22년 \$300 million 이상 수입
- (특허 라이선스 계약형) 특허 라이선스 계약형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권의 기술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하여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
 - 대상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펀드는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많은 펀드가 특허소송과 라이선스 계약을 유연하게 결합하여 운용하며 라이선스 계약으로부터의 수익에 중점을 둔 펀드도 존재
 - 라이선스 회사(licensing company)는 주로 제품을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하려는 의도로 하나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NPE 또는 특허풀회사(Patent Pool Company)⁸⁾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함

8) 특허 풀 회사는 회원들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자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는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특허침해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은 없다. 즉, 특허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나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특허권 주장, 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Fales, Mary, The Truth About Patent Trolls – An Honest Look at What’s Really Happening and at Stake (April 16, 2014).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709493> or <http://dx.doi.org/10.2139/ssrn.2709493>).

〈IP 라이선스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

라이선서	라이선시	거래내역
		'19년 1월 : Dominion의 자회사인 MPV는 약 4,000개의 디지털 이미징 특허 포트폴리오를 Garmin에 라이선스 제공
		'19년 5월 : Immersion은 그들의 "advanced haptic" 특허 포트폴리오를 게임과 VR 컨트롤러용으로 Sony에 라이선스 제공
		'19년 5월 : IPValue는 반도체 메모리, 논리회로 및 제조공정 분야에서 2,000개 이상의 특허를 라이선스 제공
		'19년 6월 : Sisvel은 100개의 DSL 특허 포트폴리오를 ASUS에 라이선스 제공
		'19년 6월 : Intellectual Ventures는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Ericsson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라이선스 제공

라. 주요 운용사 및 IP펀드 규모

□ 미국의 IP펀드 규모는 통계로 조사된 바는 없으나, 주요 펀드 규모를 가지고 추정하면 미국에만 1천억원 이상의 펀드가 30개 이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IP펀드 규모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으나, IP투자전문가 자문회의 결과('23.10) 미국에서만 1천억원 이상의 펀드가 30~40개 이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시장 1위 NPE인 Fortress Investment Group의 경우는 9억 달러의 단일 IP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NPE인 Intellectual Ventures사의 경우 총 60억 달러의 51개 펀드를 운용중이며 평균 1.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그 외 Parabellum Capital, GLS Capital, LLC, Longford Capital management 등의 운용사도 약 3.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IP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미국 주요 운용사의 펀드규모는 약 97.4억 달러로, 이를 제외한 IP운용사들의 IP펀드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시장의 IP 펀드 규모는 최소한 10조 이상으로 추측됨

〈북미의 주요운용사 IP펀드 운용 규모〉

국가	운용사/펀드명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미국	Intellectual Ventures社	대표적인 공격적 IP매입펀드 (51개 펀드 운용)	평균 1.2억 달러 (51개 펀드, 총 60억 달러)
	RPX社	대표적인 방어형 펀드 (1억 달러 이상의 매입펀드 배정)	1억 달러
	Fortress Investment Group	투자관리 회사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운용	'18년 첫 번째 IP펀드에서 9억 달러 모집, '21년 두 번째 IP펀드 (4억 달러 규모) 모집 중 ('21) (bloomberg law, 21.4.7.)

국가	운용사/펀드명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Parabellum Capital	소송펀드 중심으로 운용	2020년 4.5억 달러 규모의 소송 펀드 출시 (bloomberglaw, 20.5.26.)
	GLS Capital, LLC	기술 및 제약산업의 IP소송에 투자	'20년 3억 4천 5백만달러 모집(GLS Capital, LLC는 첫 번째 소송 금융 펀드)
	Longford Capital management	사모펀드 회사 중 하나	운용 중인 자산은 현재 12억 달러 '21년 6억 8,200만 달러 모집 완료 (펀드 III)
	Altitude Capital Partners	사모펀드 운용 광범위한 IP를 바탕으로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확보	2억 5천만 달러 (1개 펀드 운용 중)
	Magnetar capital	헤지펀드운용	운용중인 자산규모 123억달러(약 14조원) Coreweave 시리즈 B 모집에 2억2100만달러 투자(Nat Friedman and Daniel Gross도 투자)
	Acarcia search	라이선스 및 소송펀드 중심	4억 달러
	운용중인 IP펀드 전체 규모 1개 펀드의 평균 규모		97.4달러 3.87억 달러

註1. 국가별 평균 펀드규모는 주요운용사의 운용 펀드금액의 단순 합계 및 평균임

□ (종합) 미국은 IP금융 시장이 가장 발달하여 **정부 지원 없이도 민간 시장에서 IP투자가 활발**

○ 미국에서는 1천억원 이상의 IP직접투자 펀드가 30개 이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IP직접투자펀드 규모에 대한 공표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주요 운용사의 펀드 운용 현황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미국에서만 1천억원 이상의 펀드가 30개 이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는 정부주도로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한 IP기업투자 분야와 IP직접투자 분야로 구분하여 펀드가 결성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두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투자펀드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 IP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됨

** 미국시장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VC펀드는 '22년 기준, 769개의 펀드에서 총 1,626억 달러가 결성됨

○ 미국의 IP투자시장이 활발한 것은 미국의 금융시장규모가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높은 IP권리 보장 수준*과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동기 의식을 높이고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채택됐으며, 특히 특허권 진화 정책(pro-patent)하에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제가 있음

○ 또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IP 비즈니스모델의 등장, 신탁금융 등 IP 사업화 금융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높은 인식 등도 IP펀드의 왕성한 투자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2 중국

가. IP펀드 개요

□ 중국 IP펀드의 플레이어는 투자자, 운용사, 투자처로 구성됨

○ (투자자) IP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투자전문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자금으로 국가 및 관할 지역의 중점산업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업) 자사 주력 사업 분야에 관련된 IP펀드에 투자

* 1기 IP펀드의 민간자금의 상당액이 샤오미, 진산커지, 순위이, TCL그룹 등 전기전자통신기업의 투자금이었음

- (투자전문기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서 IP펀드에 투자, 투자처를 다변화함으로써 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함. 참여도 측면에서는 낮으나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큰 투자자로 IP소송이나 IP소송방어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짐

○ (운용사) 투자전문회사,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등이 있음

- 대표적인 투자 전문회사로 스완중신(众信)자산관리 유한회사로 스완성 IP투자펀드 등 10개 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펀드 총규모는 100억 위안에 달함

○ (투자처) IP를 핵심자산으로 하는 기업,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있음

- 자금필요시 IP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IP펀드에 대한 요구가 큰 편임

□ 중국 IP펀드 관련 정책 및 제도

○ (중앙정부) '14년 국무원 판공청의 정책으로 은행, 증권, 보험, 신탁업이 IP금융서비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IP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펀드 조성을 시작

정책명	관련내용	비고
지식재산권국 등 부서에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심층 실시하는 것에 관한 행동계획 (2014-2020년)에 관한 통지	- 국가산업발전의 재정 자금 및 펀드가 과학기술 성과의 IP확보와 IP사업화를 촉진시키도록 유도 - 은행, 증권, 보험, 신탁업이 IP금융서비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IP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 - 지방정부의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한 IP담보대출 및 펀드 조성을 장려	국무원 판공청, '14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정책명	관련내용	비고
새로운 형세하에 지식재산강국 건설 촉진함에 관한 몇가지 의견	- IP 거래 플랫폼구축을 강화하고, IP투자용자상품 개발, IP증권화 모색, IP신용담보 매커니즘을 완성 - 기업지분 인수형식 IP투자펀드 등을 확대 - 기업의 IP 라이선싱 및 양도 지침 제정 독려 - 세금 감면 및 IP출원/유지 비용의 지원	국무원, '15년
정부 투자펀드 잠정관리방법	- 정부투자펀드 조성, 운영 및 관리, 감독관리 등에 대해 규정	재정부, '15년
十三五기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	- IP투자 펀드 등 시장화 방식을 이용하여 민간자금이 IP 밀집형 산업에 투여되도록 유도 - 민간자본으로 IP사업화 전문 펀드 조성하고 잘 작동되도록 장려 - IP평가제도 고도화, 평가표준제정 추진 - IP용자, 담보, 투자 장려, IP보합상품 및 투자상품 개발, 창업투자상품, 기업투자펀드 등 IP에 대한 투자 강화	국무원, '16년
지식재산권 강점도시를 가속 건설함에 관한 지도의견	- IP거래 생태계 구축, IP투자환경조성을 장려하고 사업화 촉진	국가지식재산권국, '16년
2019년 지식재산 운영서비스 체계 구축업무에 관한 통지	- IP금융서비스 다변화 - 산업투자, 창업투자펀드를 넘어 IP서비스기업, 우수특허창출 프로젝트 등 투자대상 확대 - IP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와 대출 상품의 연동 - IP권화 사업 추진	재정부 판공청,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 '19년

- (지방정부) '15년 지방정부, 재정청 지식재산국에서는 IP펀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책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는 지식재산운영펀드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설립 및 정비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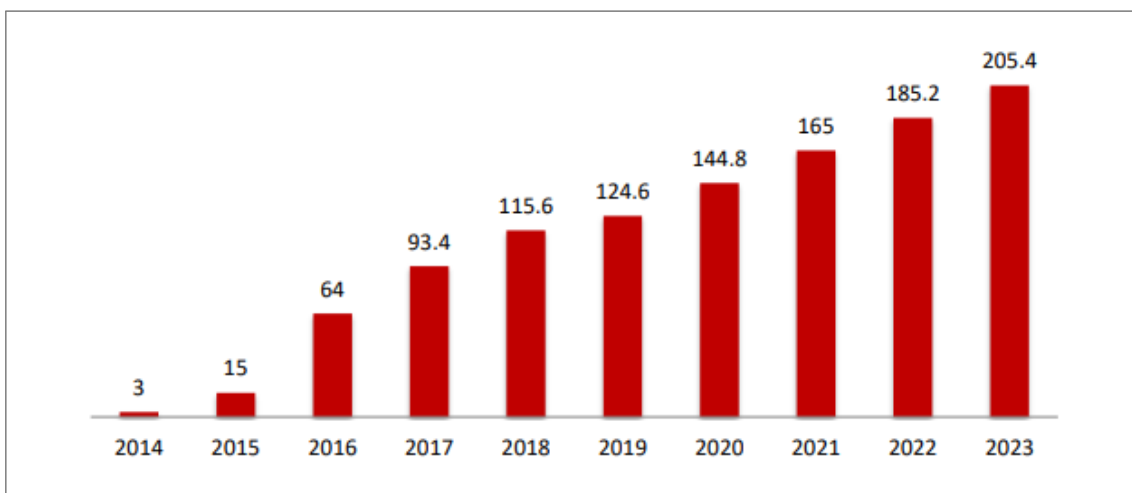
지역명	정책명	비고
베이징시	특허전환실시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혁신발전을 일조하는 것에 관한 전문 작업 방안('21-23)	'21.05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방법	'18.02
난창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 잠정방안	'20.11
닝보시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방안	'20.11
선전시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방법(시행)	'20.10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 설계 실시방안('18-20)	'18.10
하이커우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 자금 관리방법	'19.11
	지식재산권 방전 전문 자금 관리방법	'19.09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 방법	'19.09
청두시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잠정 관리방안	'19.03
샤먼시	지식재산운영 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 자금 관리방법	'18/09
항저우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관리방법(시행)	'17.02
산둥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유도 펀드 관리 실시 세칙	'15.12

나. IP펀드 시장 현황

□ (중국 IP펀드 시장규모) 중국의 IP펀드시장은 '14년 3억위안에서 '18년 113.6억위안까지 연간 성장률 148.1%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IP펀드 규모의 급성장에는 첫째, 지방정부가 IP펀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정부가 주도가 되어 출자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독려했던 점, 둘째, IP펀드 운용방식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다양한 운용방식을 시도하면서 민간 투자기관의 참여가 있었음

〈중국 IP펀드 시장규모('14~'19.10 / 단위: 억위안)〉



주 1. '19~'23년 수치는 예상치

* 출처: 보우보우(头豹)연구원의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펀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발명진흥회의 '중국 지식재산 금융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2021)'를 재인용

□ 중국 IP펀드는 '14년도에 최초로 조성되어,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하며 발전 단계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 (초반 : '14년~'15년) 이 시기 IP펀드는 정부주도로, 민간투자기관 운용, 해외특허매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IP펀드 조성과 운용에 대해 시도하였으나 경험부족, 관련 법률 부족 등으로 IP펀드 규모 성장이 완만하였음

- '14년 4월, 중국의 최초 지식재산 펀드인 루이창(睿创) 특허 운영 펀드 설립
- '15년 3월, 중국 최초 해외 특허 운영 펀드인 치싱텐 (七星天) 해외 특허 운영 펀드가 수저우(苏州)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단지에 설립
- '15년 11월, 중국 최초의 국가 자금이 주도하는 IP펀드인 귀쯔쯔후이 (国知智慧)IP펀드가 베이징에서 조성되어 시범 운용됨
- '15년 12월, 중국 최초 중앙 정부 재정과 지방 정부 재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베이징

시 중점 산업 IP펀드가 베이징시 경제 기술 개발구에서 조성됨

- (급성장기 : '16년~현재) 이시기에는 IP펀드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육성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중점산업을 위주로 IP펀드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
 - '16년에 '13차5개년' 계획 및 관련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식 재산 운영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16년 말, 펀드규모는 2015년의 3배를 넘는 64억위안으로 증가
 - 이후 '20년까지 장강 삼각주(长三角), 주강 삼각주 (珠三角), 발해 연안 지구(环渤海) 등에 지식재산주도형 혁신 발전 도시를 약 20개를 건설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재정부와 협력하여 상하이, 스촨(四川) 등 20개 성급행정구의 민간자본을 모금하여 지역 중점 산업 IP펀드를 조성
 - '17년 후난성 중점산업 IP펀드, '18년 허난성 중점산업 IP펀드, '19년 선전시 IP펀드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 IP펀드 운용사례

□ 중국은 정부 주도의 IP투자로 경제적 이익보다 지방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수요에 따른 투자보다 지방의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와 각 성,시의 지자체가 출자하여 IP펀드를 조성하고 운용되어 정책유도의 경향이 강하고, 민간투자는 아직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주도의 IP펀드 운용사례

- (베이징시 중점산업 지식재산운영 펀드) 중국 최초의 지방정부 주도 펀드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재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한 지식재산권 운영 펀드이며 총 규모는 10억 위안에 달함
 - 1기 규모는 4억 위안으로, 중앙 및 베이징시가 9,500위안을 먼저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 투자기관에서 3억 500위안을 모집
 - 운용기관은 이탕화루이(屹唐华睿)투자관리 유한회사로, 인터넷 산업과 생물의약산업 분야의 핵심특허에 투자
- (쓰촨성 지식재산운영 펀드) 중앙정부, 쓰촨성, 민간투자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
 - 총 규모는 6.8 억위안으로 1기 규모는 2.8억원 위안이 조성
 - 운용기관은 사천 중신(众信) 자산 관리 유한회사로, 우수IP를 보유한 기업,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특허 매입 등에 투자

○ (후난성 지식재산운영 펀드) 후난성 재정청과 지식재산권국이 조성한 펀드

- 주요 투자분야는 교통장비 및 기계 제조기업의 핵심특허 및 우수특허로, 관리보수규정 차별화를 통해 해당지역(후난성)외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함
- 해당지역 프로젝트 투자시 관리보수를 2.5%로, 해당지역 외 프로젝트 투자시 1.5%를 지급, 의무출자금도 1.0%에서 정액으로 변경하여 운용

○ (허난성 지식재산운영 펀드) 허난성 지식재산권국이 주도하였으며 중앙 4,000만위안, 허난 귀창(国创) 지식재산권 창 의 산업단지 운영 관리 유한회사가 6,000만위안 공동출자

- 주요 투자분야는 신재료, 전자정보 및 장비제조업의 핵심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 운용사는 선전 화신버니언(华信柏年) 자산운용회사로 민간투자기관으로 공격적으로 투자

□ 민간의 IP펀드 운용사례

○ (톈안 디지털 시티(天安数码城) 지식재산권 발전 펀드) 중국 최초의 민간 기업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IP펀드

- 1기 규모는 2,000만 위안으로 IP펀드, IP보호펀드, IP소송펀드의 3개 서브펀드를 운용
- 톈안 디지털 시티 그룹은 톈안 디지털 시티 지식재산권 보호 연맹을 설립하여 톈안 디지털 시티 단지의 기업 서비스 기관 및 대학·연구소와 연합하여 민간비영리 연합체를 마련하여, 현재 55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

펀드명	설립시간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루이창 특허운영 펀드	'14.4	베이징시와 하이덴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최초 시범 펀드	3억위안 (약 554.1억원)
베이징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15.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최초의 지방정부 주도 IP펀드	총규모 10억위안, 1기규모 4억위안 (약 184.7억원, 738.8억원) (중앙 및 정부: 9,500위안, 투자기관등 민간 자본:3억500만위안)
쓰촨성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15.12	중앙재정 성재정 청두, 더양, 맨양이 공동 출자	총규모 6.8억위안 이상(1,256억원) 1기규모 2.8억위안(517.1억원)
후난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17.11	후난성 재정청과 후난성 지식재산권국에서 조성한 펀드	6억위안 (1,108.2억원) (지방정부: 7,500만위안, 투자기관 등 민간 자본: 약 5.3억위안)
허난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펀드	'18.4	허난성 지식재산권국에서 조성한 펀드로 민간투자기관이 운용한 펀드	3억위안(554.1억원) (중앙:4,000만위안, 지방:6,000만위안, 투자 기관등 민간자본: 2억위안)

펀드명	설립시간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텐안 디지털시티 지식재산권 발전 펀드	'18.4	중국최초 민간기업 자체로 설립한 펀드	2,000만 위안(36.9억원)
치싱텐 해외 특허 운영펀드	'15.8	치싱텐 자문 유한회사에서 설립, 해외 특허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펀드	미공개

□ (종합) 중국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각 성,시의 지자체가 출자하여 IP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의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음

※ 중국의 지식재산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인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정책수립과 지방 정부의 집행으로 구현되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IP펀드시장은 '14년 3억위안에서 '18년 113.6억위안까지 연간 성장률 148.1%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IP펀드 규모의 급성장에는 중앙정부가 IP펀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출자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독려한 점, IP운용방식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다양한 IP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운용방식을 시도하면서 민간 투자기관의 참여를 유도한 점임
- 그러나 중국은 아직 중앙정부와 각 성,시의 지자체가 출자하여 IP펀드를 조성하고 운용되는 정책유도의 경향이 강하고, 민간투자는 아직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유럽

- 유럽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IP연계 지원사업 및 정부주도의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럽 IP금융의 발전과 정책) 유럽의 경우,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P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벤처캐피탈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자금 조달 등을 중심으로 IP금융이 발전하고 있음

〈주요 유럽 국가들의 IP금융 지원 방향〉

IP금융을 “IP를 담보로 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정의하고, 기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열티, 영업비밀 등 다양한 IP를 활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IP금융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IP금융 관련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IP금융에 대한 투자자와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IP금융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영국) 정부 개입이 거의 없는 영국 금융 산업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85년부터 회사법(Companies Law)에서 채권, 동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동담보제도’를 도입
 - '13년에는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 지식재산청(IPO)에서 분야별 금융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인 Banking on IP를 발표*
 - * Banking on IP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부채 자본조달 : 은행대출, 자산담보 대출, 벤처대출, 개인간 대출,
 - ▶자기자본 자본조달: 최근 경향,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 ▶관련 이슈 : 가치인식, 모니터링, 회계 계정 상 가치인식, ▶정책적 제언: 10대 정책 제언
 - '21년 발표한 IP금융 혁신 전략⁹⁾을 통해, IP를 활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영국의 IP 기반 경제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 ※ 기업들이 성장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IP Access’ 펀드를 출시하여, IP audit plus program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IP 자산 내의 가치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IP를 관리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ip-at-the-heart-of-new-innovation-strategy>

- (프랑스) IP금융 활성화와 연계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계획(Plan d'ac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financement de l'innovation)¹⁰⁾을 발표하는 등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국 산업의 후퇴를 따라잡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독일) '22년 IP를 활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독일의 IP 기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계획(Plan für die Förderung der IP-Finanzierung)¹¹⁾을 발표하였음

□ 유럽 IP금융시장 현황

- 유럽의 경우, 유럽 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 이외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인 EIF¹²⁾를 중심으로 IP금융 관련 지원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EIF의 자금 조달 지원 사례¹³⁾〉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럽투자자금(EIF)*과 스웨덴의 Ark Kapital**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의 첨단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에 1억 4,6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는 계약에 서명했음을 고시***('23.4)

* 유럽투자자금(European Investment Funds):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과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EU의 특수금융기관

** 차세대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술 기업을 지원함

*** European Investment Fund and Swedish Ark Kapital have signed an agreement to facilitate over € 146 million in new financing for high-tech SMEs in Sweden, Denmark and Germany.

○ 주요 내용

◦ EU의 새로운 자금 조달 프로그램(The Invest EU programme)

-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유럽연합(EU)에 중요한 장기 자금을 제공함
- 해당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의 첨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속 가능성, 혁신 및 디지털화, 기술 및 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 1억 4,600만 유로 이상의 신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함
- '21-'27년 동안 3,720억 유로 이상의 추가 투자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회사가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금융을 포함한 협력을 가속화함
- Ark Kapital은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술의 흡수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혁신과 디지털화 주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10) Plan d'ac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financement de l'innovation

11) <https://www.usp.gv.at/it-geistiges-eigentum/foerderung-intellectual-property.html>

12) EIF(European Investment Fund, 유럽투자자금)가 대표적인 사례

13) 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board_seq=53530&board_class=BOARD03&rootId=2006000&menuId=2006101

◦ 자금 조달 프로그램의 효과

- 평생학습,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 추구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Ark Kapital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및 독일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원함
- 교육 기술(EdTech)에 중점을 두고 기술,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
- 투자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유럽 경제의 녹색 전환을 지원

○ 이와 함께, EUIPO는 EU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IP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원 확대의 일환으로 IP금융, 특히 민간 중심의 IP투자 활성화를 위해, '21년 7월 민간 VC 협회인 “Invest Europe¹⁴⁾”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모펀드의 IP투자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도 함

- (영국) 정부 주도의 Tech Nation¹⁵⁾을 중심으로, British Business Bank의 투자 전문 회사인 BBB Patient Capital Limited 등과 함께 영국 소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프랑스) 정부가 투자한 Brevet펀드를 통해 NPE(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와 같은 역할과 동시에, 역내 중소기업과 대학의 우수 IP를 발굴 및 권리화, 라이선싱 등의 업무를 통한 IP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함

□ 유럽 IP투자 사례

○ 유럽의 경우, IP를 독자적인 금융상품(보증, 담보나 대출 등)의 대상이 아닌 우수한 R&D 역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일반적임

- '21년 7월, 영국의 BBB Patient Capital Limited의 경우 기존 투자펀드와 차별화된 IP투자 상품(Future Fund)을 개발*하고, 현재까지 Epsilogen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375m 상당의 투자를 집행하기도 함

* Future Fund의 경우, 영국 내 기업 중 R&D 집중도가 높은 동시에 기업의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¹⁶⁾임

14) <https://www.investeurope.eu/>

15) 영국 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초기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TCIO) 등과 합병을 진행

16) <https://www.britishpatientcapital.co.uk/future-fund-breakthrough/>

〈BBB Patient Capital Limited의 Future Fund 투자 사례〉

- “Future Fund: Breakthrough”는 영국 Patient Capital이 R&D 집약적인 영국 기업에 민간 부문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3억 7천 5백만 파운드 프로그램

	3,075만 파운드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런던에 본사를 둔 암 치료용 신규 치료 항체 개발업체인 엡실로젠에 투자 - 혁신적이고 R&D 집약적인 영국 기업에 민간 부문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3억 7,500만 파운드의 프로그램인 Future Fund: Breakthrough를 통해 이루어짐	'22.3
	5천만 파운드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Microbiotica에 투자 - 투자는 Flerie Invest와 Tencent가 주도했으며 Cambridge Innovation Capital, IP Group 및 Senture Partners가 참여	'22.3
	파라그라프의 6천만 달러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 참여 Future Fund: Breakthrough를 통해 이루어짐	'22.3
	Quell은 자금조달라운드에서 1억 5,600만 달러를 모집, British Patient Capital도 Quell Therapeutics의 Series B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여 투자	'21.11
	Ultraleap은 자금조달 라운드에서 6천만 파운드 달러를 모집, British Patient Capital이 Ultraleap의 Series D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여 투자	'21.11

□ (종합) 유럽 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 이외 **정부 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인 EIF¹⁷⁾를 중심으로 IP금융 관련 지원 시장이 확대중**

- 유럽의 경우 IP를 독자적인 금융상품(보증, 담보나 대출 등)의 대상이 아닌 우수한 R&D 역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일반적임
- IP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IP금융, 특히 민간 중심의 IP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의 IP투자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있음
 - 영국은 정부 주도의 Tech Nation¹⁸⁾을 중심으로 영국 소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프랑스는 정부가 투자한 Brevet펀드를 통해 우수 IP를 발굴 및 권리화, 라이선싱 등의 업무를 통한 IP금융 시스템 구축

17) EIF(European Investment Fund, 유럽투자기금)가 대표적인 사례

18) 영국 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초기 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TCIO) 등과 합병을 진행

4 일본

가. 일본의 IP금융

□ (일본의 IP금융 의의) **경제 규모에 비해 기술금융·기술평가는 부진한 편,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이 여전함**

- 정부는 대학교 등의 기초과학연구 및 동 결과물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하는데 주로 보조금을 제공
 - 일본의 기술금융은 '90년대 중반부터 통산성의 주관으로 유망산업을 정한 후 담보평가 시스템을 개발
 - 선정된 산업의 기술평가를 위해 일본 공업기술진흥협회에 기술평가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일본개발은행, 장기신용은행, 스미토모은행, 오가키텍은행을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해 담보대출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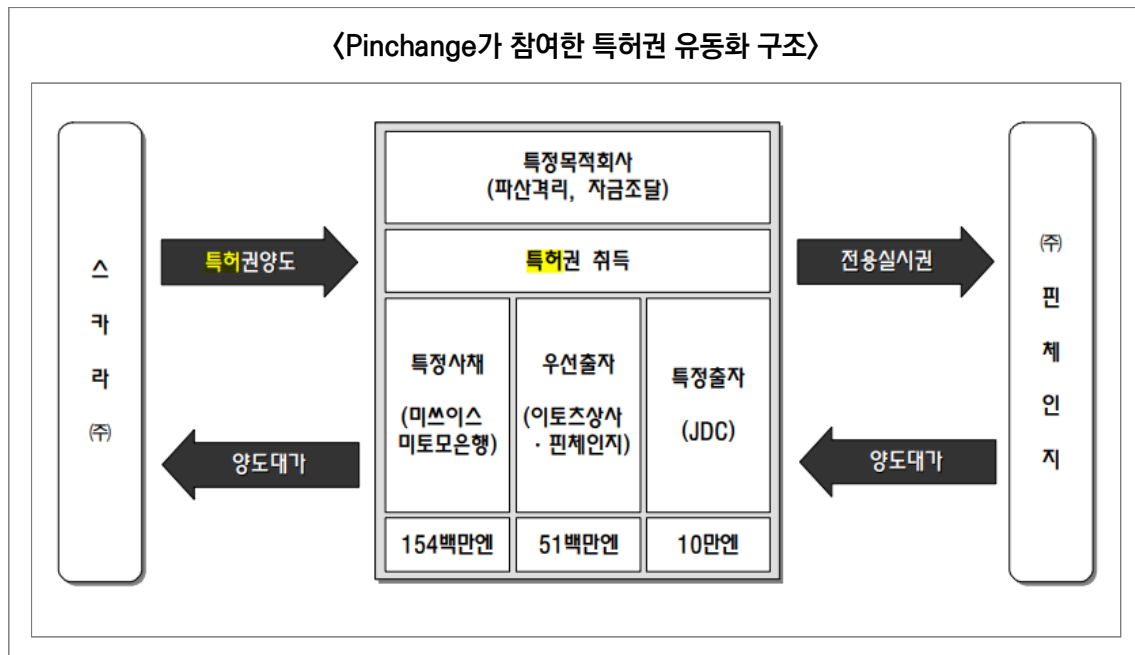
□ (일본 IP금융의 발전) '10년대 초를 전후로 일본에서 IP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한 동안 축소되었고, **현재에는 주로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 '90년대 정책금융기관이 IP담보대출을 시행,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이 '95년 중견기업에 대해 160억엔의 IP담보대출을 실행
- '20년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주도하고 시중은행의 참여를 독려
- '03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특허권의 유동화를 위한 모델사업을 위탁받은 '특허권유동화증권화 연구회'가 약 2억엔 규모의 일본 제 1호 특허권 유동화를 실현

〈IP유동화 사례〉

Pinchange의 특허권 유동화

- '03년 약 2억엔 규모의 특허권 유동화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처음으로 시도
- 자금조달 구조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라사의 특허권을 유동화 전문회사(SPV)인 TMK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에게는 특허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토츠 상사, 핀체인지사는 우선출자를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
- 특허권 양도로 인한 프로젝트자금은 스카라사가 받고, 핀체인지사는 특허권의 보유자가 된 TMK에게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인정받아 건강·미용기구를 개발·판매하여 로열티를 지불



- '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기술특허를 통한 자본조달 및 중개사업 등 지식재산 상품판매가 공식화 되어 있음
-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금융서비스에서 투자·활용으로의 관점 전환·확대
 - (IP금융의 경과와 한계) 일본 기업의 특허출원건수 대비 IP의 가치가 기업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시각 차이로 IP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기업의 혁신 창출력이 저하되는 한편, 지속가능성의 강조와 IFRS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정비로 국제적인 환경 변화의 발생하는 등 종래의 IP금융 모델이 지닌 한계가 지적됨
 - (정책의 방향 전환·확대)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에 관한 내용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21년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知財・無形資産の投資・活用戦略の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¹⁹⁾을 도입 및 '23년 한 차례 개정하는 등 전략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 활용과 이를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일본 금융청(金融庁) 및 법무성(法務省)은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을 검토 중으로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 및 그 장래성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스타트업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자금, 사업승계 및 사업 재생의 측면에서 활용을 고려함

19)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pdf/v2_shiryo1.pdf>

□ 일본 IP금융 관련 주요 시책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23년 3월 2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2.0을 새롭게 발표
- (배경) 기업이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활용을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1년 최초로 발표
- (대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장회사의 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그 외기업의 지재·무형자산의 투자·활용전략,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종사자가 투자에 관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구성
- (원칙 및 실행계획의 제시) 5대 원칙과 7대 실행계획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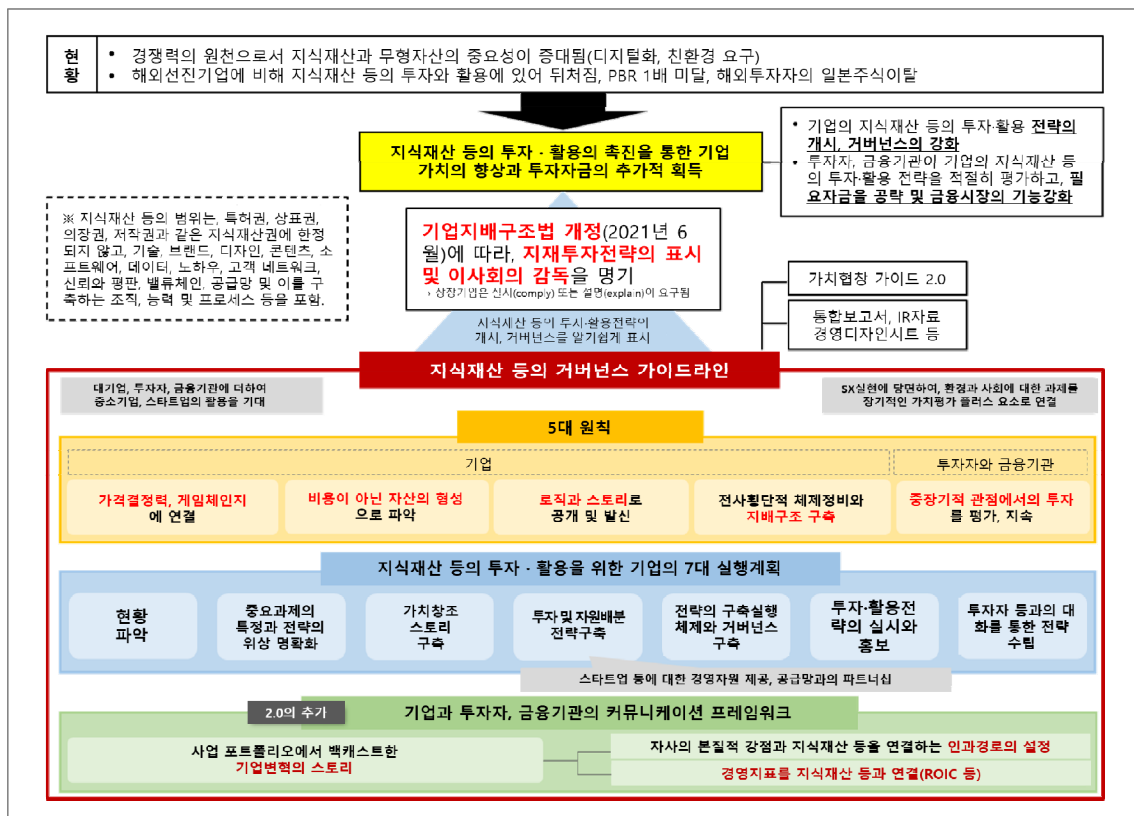
구분	내용
5대원칙	① 지식재산·무형자산(지식재산 등)의 활용에 있어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은 혁신에 의해서 경쟁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지'를 일으키거나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회피해 높은 이익률을 실현 ② 지식재산 등의 투자를 '회계비용'이 아닌 '자산형성'으로 재검토 ③ 지식재산 등의 투자·활용에 회사 전체가 실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④ 지식재산 등의 투자·활용 전략의 실시에 대한 논리를 정돈하여 설득력 증대 ⑤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도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는 지식재산 등에 대한 투자를 평가해 투자 및 용자의 판단에 반영
7개 실행계획	① 현황 파악 ② 중요 과제의 특정과 전략의 위상 명확화 ③ 가치창조 스토리 구축 ④ 투자 및 자원배분 전략 구축 ⑤ 전략의 구축·실행 체제와 거버넌스 구축 ⑥ 투자·활용 전략의 실시·홍보 ⑦ 투자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전략 수립

- (주요내용) 가이드라인 1.0에서 제시되었던 5대 원칙과 7대 계획을 유지하되, 주요 한 계로 지적되었던 소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기업과 투자자의 조율) 주로 기업과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지식재산·무형자산에 관련된 대응 및 기업 가치 공개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정비를 목표로 책정
- (기대효과) 기업에서 보유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이 외부 기관 등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과의 조합으로 기업 가치로 활용되거나 스타트업 등의 기업이 금융기관과 상호 작용할

때 사용되고 투자자 및 금융기관은 기업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연계효과) 경제산업성의 「가치협창가이드(価値協創ガイダンス) 2.0」과 함께 적용, 지속가능성, 변모를 가속화하고 EU와 IFRS의 비재무 정보공개에 대한 규칙 정비로의 대응

〈지재추진계획에 따른 지재투자 가이드라인의 적용개요〉



* 출처: 知財・無形資産がバナンスガイドラインVer.2.0)

○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지식재산 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
'23년 6월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3년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

- (배경) 일본은 '03년 이후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따라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수립·제시함
- (주요내용)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향해(多様なプレイヤーが世の中の知的財産の利用価値を最大限に引き出す社会に向けて)'를 주제로 지식재산 중점 시책 10개를 책정한바, 이중 "지식재산·무형 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강화"가 네 번째 시책과제로 제시됨

나. IP투자펀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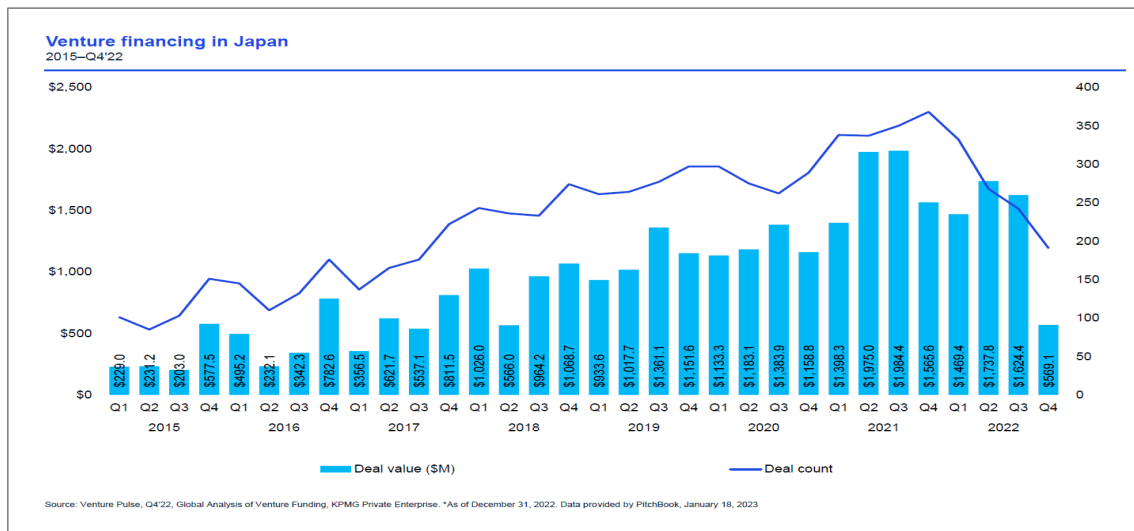
□ 일본정부의 IP투자펀드 활성화 정책과 제도

- (초기) '63년 중소기업투자육성법(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이후, 경제산업성 주도로 공적 성격을 지닌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설립,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여 초창기 벤처투자모델을 선도함
- (민간부분) '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민간규모의 벤처캐피탈이 등장하였지만 석유파동으로 활동이 줄어들었고, '80년대의 벤처붐도 플라자합의 이후로 엔화가치변동에 따라 다시 침체되었으나, '90년 이후 인터넷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시 확산되기 시작
- (CVC) 2010년대 이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alue Capital)의 활동이 증가, 대기업이 CVC를 통해 기업을 최종인수하여 자사 서비스의 도입하는 등의 형태로 변모.²⁰⁾

□ IP투자펀드의 시장규모

- 일본의 VC투자는 '1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일본 VC의 투자추이〉



* 출처: KPMG(2022), Q4'22 Venture Pulse Report – Global trends

※ 다만 투자펀드중 'IP투자펀드'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펀드의 시장규모와 투자의 내용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 PWC, “CVCファンドを活用したベンチャー企業と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事業シナジー創出で押さえておくべき5つの視点”,

다. IP펀드 운용사례

- 일본은 주요자산이 IP인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등은 활발하나, IP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IP 프로젝트투자” 형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펀드명	설립시간	주요 특징	자금출처 및 펀드 규모
INCJ	'18.09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의 기한만료 이후 5억엔의 출자금으로 새롭게 신설 분할하여 출발한 펀드	'11년도 20여건 수준에서 '20년까지 누계 144건에 대해 총 1조 3603억엔을 기록, 일부 매각을 포함한 Exit 건수는 108건이며, 일본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음
IP Bridge	'13.07	일본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 특허의 매입 및 이전추진, 궁극적으로 미사용 IP 자산의 사업화를 목표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정부), 파나소닉, Mitsui & Co
The Life Science IP Platform Fund(LSIP)	'10.08	사모펀드로 대학과 연구소들로부터 잠재성 있는 IP구매 후, 특허들을 각각의 기술 분야 및 활용분야별로 그룹핑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6백만 미 달러), 일본 4개 대규모 제약 회사(각각 300,000 미 달러),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Network, Inc(운영)

○ 민관(民官)펀드로서 INCJ

- (의의) INCJ는 2018년 9월 종래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의 기한만료 이후 5억엔의 출자금으로 새롭게 신설분할하여 출발한 펀드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차세대 산업의 육성·창출을 목표로 함
- (투자기준과 대상) 크게 ① 사회적 요구에 대응, ② 성장성 및 ③ 혁신성의 3개 기준을 적용하고, 다양한 사업스태이지에 투자

〈투자기준〉

사회적 요구	• 국내외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응 •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
성장성	•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자금공급이 예상될 것 • 취득하는 주식 등의 처분이 분명히 예상될 것
혁신성	• 첨단기초기술의 결집 및 활용 • 벤처기업 등 경영자원의 결집 및 활용 • 기술을 핵심으로하는 사업의 재편과 통합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영자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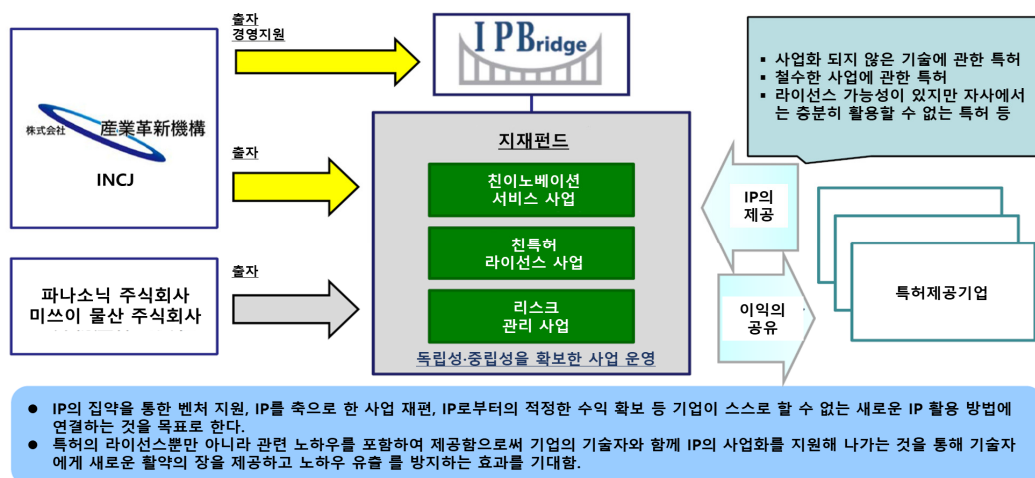
〈투자대상〉



- (주주) INCJ는 국가가 3,669억엔, 기업이 135억엔을 출자하여 구성
- (투자실적) '11년도 20여건 수준에서 '20년까지 누계 144건에 대해 총 1조 3,603억엔을 기록, 일부 매각을 포함한 Exit 건수는 108건이며, 일본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음²¹⁾
- (투자분야) 소재·화학, 전자장치, 산업기계, 에너지, 수송·자동차, 소비재·소매, 건강·의료, IT, 비즈니스서비스, 콘텐츠, 인프라 및 IP 등

〈INCJ투자〉

- (대상) IP Bridge가 조성·운영하는 지재 펀드
- (사업 내용) 지식재산권의 취득, 보유, 관리, 사용·실시의 허락 및 매매 및 이들 알선 및 중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에 관한 조언 및 컨설팅
- (지원 결정 금액 / 공표일) : 290억엔(상한) / '13년 7월 25일

21) <<https://www.incj.co.jp/>>

○ IP Bridge

- (설립) IP Bridge는 '13년 일본 최초로 설립된 IP펀드 운용사로서 잠재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지재의 운용 및 활용지원을 실시
- (주요사업) ① 라이선스, ② 컨설팅 및 ③ 혁신 사업의 3개 사업을 수행

〈IP Bridge의 주요사업〉

라이선스	• 잠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IP를 찾아 개별 기업의 사업 시점을 근거로 최적의 활용을 실현
컨설팅	• 경영 전략으로서의 IP의 기획·운영하고 신규 시장 개척, 기존 상품 매출 확대, 라이선스 수익 획득 등
혁신사업	• 성장 단계의 기업에 '지식재산 전담부서'로서의 역할 제공 • 출원 지재의 전략적 선별·획득, 라이선스 협상, 지재 소송 등 지원 대상 기업의 가치 향상에 기여

- (주요 분야) IP Bridge는 일본 국내 3,500여개의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동통신, 반도체, 화상 코덱, 디스플레이 및 모터 등 ICT 영역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식품관련 등으로 폭넓은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활용을 추진
- (I Holdings의 설립) IP Bridge는 IP전문펀드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설 지주회사 I Holdings를 설립하여 INCJ가 보유하는 IP Bridge의 주식 전량을 양도, 제휴기업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IP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음

□ (종합) 일본은 기술금융·기술평가는 부진한 편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중심의 IP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IP유동화는 담보대출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으며 영화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 저작권이 주된 기초자산으로 대부분 신탁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동화는 신탁구조로 이루어지며 자산담보대출이나 특수목적기구(조합, 신탁, 주식회사)를 통한 유동화 증권 발행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참고 주요국의 주요 운용사의 펀드 사례조사

〈주요 운용사 IP직접투자펀드 운용규모〉

국가	운용사/펀드명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미국	Intellectual Ventures社	대표적인 공격적 IP매입펀드 (51개 펀드 운용)	평균 1.2억 달러 (51개 펀드, 총 60억 달러)
	RPX社	대표적인 방어형 펀드 (1억 달러 이상의 매입펀드 배정)	1억 달러
	Fortress Investment Group	투자관리 회사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운용	'18년 첫 번째 IP펀드에서 9억 달러 모집, '21년 두 번째 IP펀드 (4억 달러 규모) 모집 중('21) (bloomberglaw, 21.4.7.)
	Parabellum Capital	소송펀드 중심으로 운용	2020년 4.5억 달러 규모의 소송 펀드 출시 (bloomberglaw, 20.5.26.)
	GLS Capital, LLC	기술 및 제약산업의 IP소송에 투자	'20년 3억 4천 5백만달러 모집(GLS Capital, LLC는 첫 번째 소송 금융 펀드)
	Longford Capital management	사모펀드 회사 중 하나	운용 중인 자산은 현재 12억 달러 '21년 6억 8,200만 달러 모집 완료 (펀드 III)
	Altitude Capital Partners	사모펀드 운용 광범위한 IP를 바탕으로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확보	2억 5천만 달러 (1개 펀드 운용 중)
	Magnetar capital	헤지펀드운용	운용중인 자산규모 123억달러(약 14조원) Coreweave 시리즈 B 모집에 2억2100만달러 투자(Nat Friedman and Daniel Gross도 투자)
	Acarcia Research	라이선스 및 소송펀드 중심으로 운용	'17년 기준 4억 달러 펀드 운용
	운용중인 IP펀드 전체 규모 합계 1개 펀드의 평균 규모		97.4억 달러 3.87억 달러
프랑스	Brevets펀드	프랑스 정부 및 공탁기구(Caisse des Depots)가 50%씩 기금 출자	1억 유로
영국	Harbour Litigation Funding Ltd	세계 최대의 소송펀드 운용 기관	약 15억 달러 규모의 litigation 펀드 조성 * 1억달러(~'11), 1.6억달러('12~), 3.5억달러('13~), 5억달러('16~), 4.2억달러('18~)
	BBB Patient Capital Limited	BBB(British Business Bank)의 자회사로, 혁신기업에 투자	3억 7천 5백만 파운드 규모의 "Future Fund: Breakthrough"라는 IP투자상품을 개발하여 민간 부문 투자자와 공동 투자(4억7천 만달러) * 현재 5개의 기업에 대해 투자를 진행중
	평균		9.85억 달러
이스라엘	Yozma펀드	IP 또는 IP집약기업 투자 펀드 (초기 정부자금 1억 달러 출자)	2.1억 달러
독일	도이치뱅크社	IP 또는 IP자산 투자 펀드	1.5억 유로
일본	IP bridge社	일본 정부와 26개 기업 등이 협력하여 IP 펀드 조성	3억 달러 (IPBridge News, 20.4.7.)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국가	운용사/펀드명	주요 특징	(주요) 펀드 규모
중국	루이창 특허운영 펀드	베이징시와 하이톈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최초 시범 펀드	3억위안 (554억원)
	베이징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최초의 지방정부 주도 IP펀드	총규모 10억위안 (1,848 억원)
	쓰촨성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중앙재정 생재정 청두, 더양, 맨양이 공동 출자	총규모 6.8억위안 (1,256억원)
	후난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펀드	후난성 재정청과 후난성 지식재산권국에서 조성한 펀드	6억위안 (1,108억원)
	허난성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펀드	허난성 지식재산권국에서 조성한 펀드로 민간투자기관이 운용한 펀드	3억위안 (554억원)
	텐안 디지털시티 지식재산권 발전 펀드	중국최조 민간기업 자체로 설립한 펀드	2,000만 위안 (37억)
	차싱텐 해외 특허 운영펀드	차싱텐 자문 유한회사에서 설립, 해외특허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펀드	미공개
평균			약 892억 원
호주	IMF Bentham Limited	Bentham의 모회사. 소송펀드 중심으로 운용	2018년 5억 달러 규모의 US litigation finance investments (Fund 4) 출시 (omnibridgeway, 18.12.11.) 2019년 5억 달러 규모의 non-USA 분쟁 펀드 (Fund 5) 출시(Litigation Finance Journal, 19. 6.19.)

註1. 국가별 평균 펀드규모는 주요운용사의 운용 펀드금액의 단순 합계 및 평균임

2. 본 표의 수치는 주요 운용사의 운용펀드 규모이므로 그 외 운용사의 운용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펀드규모는 이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제5장

IP직접투자펀드 조성방안

1. IP직접투자펀드시장 및 규모추정을 위한 방향성
2. IP직접투자펀드 적정 필요 규모
3. 기대되는 무역수지개선 효과



제5장 | IP직접투자펀드 조성방안

1 IP직접투자펀드시장 및 규모추정을 위한 방향성

- IP직접투자펀드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IP직접투자선진국 수준의 시장규모를 목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IP직접투자펀드 필요 시장 규모를 추정 후 적정모태펀드 조성액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목표가 되는 국가의 선정과 해당 국가에서의 IP직접펀드시장 규모를 파악해야함
- 그러나 IP직접투자 펀드결성액 또는 수익화에 대한 정보는 기업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IP직접투자펀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IP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범위를 규정함

가. 기준국가의 선정

- 국내 IP직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정 모태펀드 규모 추정함에 있어 미국의 IP직접투자 시장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였음
 - IP투자시장의 성숙도 측면과 해외 NPE의 우리기업에 대한 소송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비중을 고려하여 기준 국가를 선정
 - 미국은 벤처캐피탈을 발명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기술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 나라이고, 오늘날 특허투자 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²²⁾
 -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NPE소송의 약 95%가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8년~'22년) 미국전체 특허분쟁 중 NPE 연관 소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대기업에 집중된 피소 양상에 더불어 중견·중소기업을 겨냥한 NPE연관 소송도 증가 추세
- * 미국내 NPE연관소송 비중 추이: 44.4%('18년)→ 46.8%('19년)→ 48.9%('20년)→ 54.6%('21년)→ 60.6%('22년)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2년 IP Trend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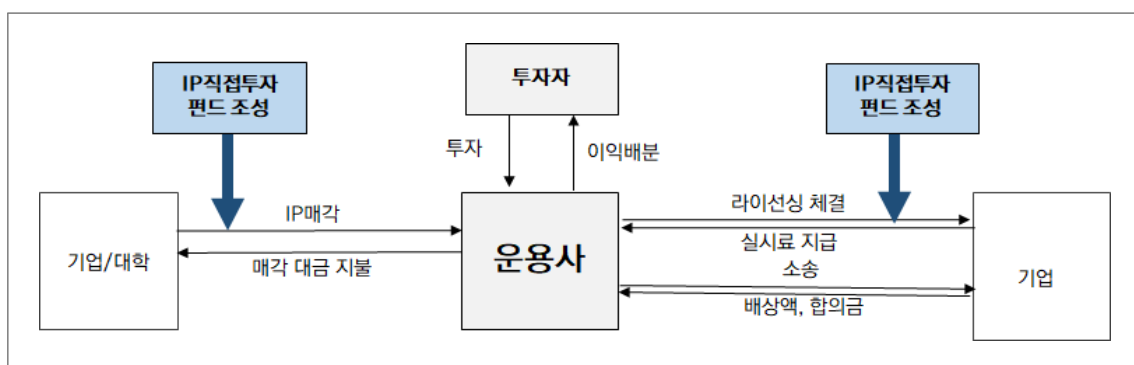
22) Nicholas, Tom, VC An American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1.

- 미국과 유럽은 NPE가 선호하는 소송장소로, '22년 통신분야 소송의 경우, 98%이상이 미국과 유럽을 선호하고 있음
 - ※ 미국이 94.69%, 유럽이 3.89%, 그 외 지역이 1.42%에 불과함²³⁾
- 또한 **핵심 NPE들의 소재지**를 분석한 보고서²⁴⁾에 따르면, 48개의 핵심 NPE중 41개사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48개의 핵심 NPE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NPE 중 캐나다 기반의 NPE인 Cedar Lane Technologies, Quarterhill Inc, 영국 기반의 M4siz Limited, 아일랜드 기반의 Atlantic IP Services Limited, 덴마크 기반의 Peter Henrik Pedersen, 스위스 기반의 PACT XPP Schweiz AG, 싱가포르 기반의 Portus Singapore Pte. Ltd., 인도 기반의 Ancora Technologies Inc.을 제외한 41개사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음

나. IP직접투자펀드 시장 범위

- **(IP직접투자펀드시장)** 본 연구에서는 IP직접투자펀드시장을 **IP직접투자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가 결성되는 시장**으로 규정하였음
- IP직접투자는 IP에 직접투자하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직접 특허를 매입하거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투자하여 라이선싱과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 하는 것을 의미함.
- IP직접투자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IP직접투자 과정에 있어서 펀드 운용사 또는 투자 기관에 의한 투자자 모집은 IP를 매입할 때와 IP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IP직접투자펀드조성시점〉



23) Qingfang, Y. (2022). Non-practicing entity's impact on China's patent market and innovation activities (Doctoral dissertation, Instituto Superior de Economia e Gestão).

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2년 NPE동향보고서(https://www.ip-navi.or.kr/upload_data/npe_html/npe_2022.html)

〈시장범위설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23.6~9월〉

- IP투자 및 수익화 기관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투자자 모집은 IP를 매입할 때와 IP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IP를 수익화하는 방법은 크게 IP라이선싱과 IP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라이선싱도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임
- * IP를 침해한 기업과 라이선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소장을 먼저 보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 및 라이선싱을 통해 보다 높은 금액과 수월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P직접투자펀드시장을 ①우수한 IP확보를 위한 IP를 매입하는 IP거래시장과 ②확보된 IP를 바탕으로 소송 등을 통해 IP를 수익화하는 IP수익화시장으로 구분함

〈'IP펀드용어'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23년 6~9월〉

- IP수익화시장은 일반적인 'IP소송펀드(IP litigation funding)' 시장으로 제 3자가 관련 소송에 대한 펀드를 결성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함. 다만 국내 정서상 'litigation fund'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소송'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특히, 정부에서 출자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수익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소송의 최종목적이 IP수익화이므로 이를 'IP수익화시장'으로 명칭을 재정립함

□ (IP거래시장) 우수 IP를 확보하기 위해 IP를 직접 매입하는데 활용되기 위해 펀드를 결성하고 자금모집이 이루어지는 시장

- (IP거래시장에서 펀드의 역할) NPE등 특허관리전문기업이 우수 IP를 확보함에 있어 자기자본으로는 매입비용이 부족한 경우, 펀드 결성하여 매입비용을 마련
 - 특히 IP금융시장이 미성숙하고 IP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IP투자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 IP매입을 위한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
 - IP직접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P투자기관에게 우수한 IP를 매입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펀드가 필요함
- (IP거래주체) IP직접매입을 통해 IP를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IP거래가 성사되어 IP를 획득해야하며, 일반적으로 IP거래시장에서 IP를 매입하는 주체는 제조기업, NPE, 방어형 NPE, 연구소/기업 등이 있으나, IP직접투자자와 연관된 IP거래주체는 NPE와, 방어형 NPE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제조 기업) 제조기업이 IP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한 IP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며 타 기업이 해당 IP 이용을 원한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실시료를 받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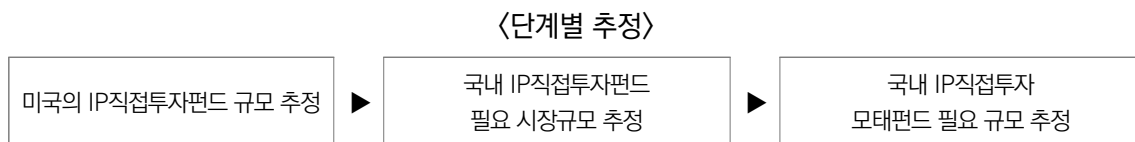
-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IP자산확보로 투자 영역이 아니므로 IP직접투자의 영역에서 제외시킴
- (NPE) NPE의 경우 특허권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매입을 통해 확보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라이선싱 및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NPE에 의한 매입의 경우 IP 매입을 통한 직접투자의 형태로, 자기자본 또는 IP투자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 진행
- (방어형 NPE) 방어형 NPE*의 경우 회원사의 특허침해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특허풀 구성을 위해 IP를 매입, 라이선싱이나 소송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방어형 NPE에 의한 IP매입도 IP에 대한 직접투자의 형태로, 특허방어펀드를 결성하여 투자 진행
 - * 방어형 NPE는 회원사들로부터 일정액의 연회비를 모아 분쟁 소지가 있거나 회원사들의 핵심사업에 관련된 특허 기술을 매입해 관리, Unified Patents와 RPX(Rational Patent)사 등 있음
- (연구소/대학)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IP거래시장에서는 주로 직무발명에 의한 미활용 특허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
- 최근 들어, 일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주축으로 대학보유기술의 사업화에서 IP투자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수준. 이 경우에도 IP직접투자의 형태로 볼수 있음
- (수익구조) 매입된 IP는 해당 IP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실시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실시계약을 거절하는 기업을 상대로 IP소송을 통해 소송에 대한 배상 또는 합의금으로 수익을 확보
- (IP수익화시장) IP보유 기업이 아닌 제 3자(Third party)가 IP소송 프로젝트를 기획,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송을 통해 수익화하는 시장
 - (IP수익화펀드) litigation funding 또는 Third-party Funding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제반 지출을 소송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판, 합의 등을 거쳐 발생하는 판결 배상액 내지는 화해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투자
 - (IP수익화시장에서 펀드의 역할) 기업은 자신의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를 발견하고도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제반 소송비용, 걸리는 기간 및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침해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권분쟁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침해분쟁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1순위로 꼽음

- 이러한 문제점을 제 3자인 펀드가 소송에 투자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됨
- (IP수익화펀드 주체) IP소송을 기획하는 주체는 NPE, 자산운용사, 로펌 등으로 IP소송은 기획 주체와 상관없이 IP에 직접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IP직접투자의 형태임
- (수익구조) 제 3자 소송주체가 해당 IP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IP소송을 통해 소송에 대한 배상 또는 합의금으로 수익을 확보
 - ※ 소송을 기획하여 운용하는 수익화펀드드의 경우도,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소송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70%이상 차지함

2 IP직접투자펀드 적정 필요 규모

□ 국내 IP직접투자펀드 조성 필요규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추정하였음

- (미국의 IP직접투자시장 규모추정) 규정된 범위를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서 미국에서의 IP직접투자펀드의 시장규모를 추정함
- (국내 IP직접투자펀드 필요 시장규모 추정) 지향시장인 미국 시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국내 IP직접투자펀드의 필요규모를 추정함
- (국내 IP직접투자 모태펀드 규모 추정)정책자금으로써 필요한 모태펀드의 규모를 추정함



가. 미국의 IP직접투자펀드 규모 추정

□ (IP거래시장에서 IP직접투자펀드 규모추정) IP거래시장에서의 IP직접투자펀드규모는 IP 거래중개시장에서 IP매입규모를 통해 추정

- 국내의 IP거래중개 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IP거래중개시장만 형성되어 있는 점, 국내 NPE는 본질적으로 펀드만으로 투자 목적의 IP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보아 미국 내 거래시장 규모는 국내 IP직접투자 펀드 시장 규모로 산입
- ① 미국의 IP거래중개시장(Broker market)은 최근(2020~2022) 연간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IAM, 2021~2023년 자료)

〈미국 IP중개거래시장(brokered patent market) 규모(누적) /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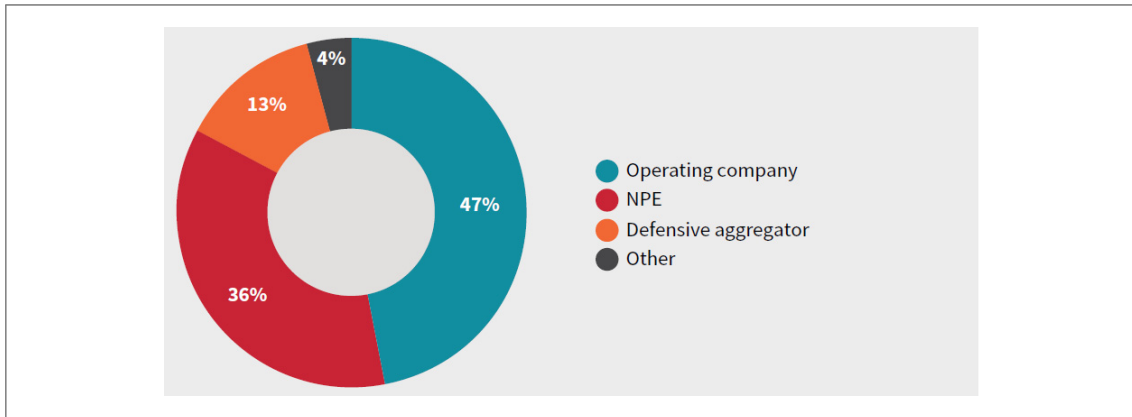
	2020(Q1)	2021(Q1)	2022(Q1)
The brokered patent market	360	380	400
평균(연간) 성장규모	20억달러/year		

출처: The brokered patent market in 2020(IAM, 2021), The brokered patent market in 2021(IAM, 2022), ROI Broker Summit 2023(Richardson Oliver Insights, 2023)

- ② 해당시장에서 IP직접투자의 주체가 되는 NPE와 방어형 NPE의 거래를 살펴보면, NPE가 36%, 방어형 NPE가 13%를 차지하여 전체 매수의 약 49%를 차지

- NPE와 방어형 NPE는 매수한 IP를 고부가 가치화하여 다른 기관에 매도하거나, IP에 대한 라이선싱 및 소송 등에 활용하므로 NPE와 방어형 NPE의 거래 비율을 가지고 추정

〈IP거래 중개시장에서 매수자 유형별 거래비율〉



출처: Distribution of buyer type by sale year 2016-2017(IAM, 2018)

- 따라서, 연간 IP거래시장에서 IP직접투자를 위해 IP매입에 활용되는 펀드의 규모는 IP 중개거래시장규모인 20억달러의 49%에 해당되는 9.8억 달러로 추정
- (IP수익화시장에서 IP직접투자펀드 규모 추정) IP수익화시장에서 IP직접투자펀드 규모는 3rd party IP수익화펀드 규모로 추정

〈북미 IP소송투자펀드 시장규모 / 단위: 백만달러〉

By Case Type	2022	2023	2024	2025
Commercial Litigation	1,809.9	1,999.1	2,212.1	2,452.4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644.9	720.3	805.9	903.2

주1. 연간 신규 조성 규모

출처: Global Litigation Funding Investment Market(Research Nester, 2023)

- 북미의 3rd party IP소송펀드 시장규모는 7.203억달러('23년 기준) 로 추정
- 북미 소송규모(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 88.1%에 해당*되어 미국의 IP소송펀드 시장 규모는 7.203억달러의 88.1%에 해당되는 6.346억달러로 추정됨
- * 출처: Global Litigation Funding Investment Market(Research Nester, 2023)

□ (미국의 IP직접투자펀드시장 규모)

- IP거래시장과 IP수익화시장에서 IP투자를 위해 매년 신규로 형성되는 IP펀드 규모는 16.146억 달러로 추정됨

〈IP직접투자펀드의 연간 신규 시장규모〉

시장구분	시장규모(억달러)
IP거래시장(IP매입)	9.8 억달러
IP수익화시장(IP수익화)	6.346억 달러
전체 시장 규모	16.146억달러

나. 국내 IP직접투자펀드 필요 시장규모 추정

□ IP거래시장에서의 IP직접투자펀드와 IP수익화시장에서의 IP직접투자펀드의 역할이 다르므로 두 시장을 구분하여 국내규모를 추정

- (IP거래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 IP거래시장에서 IP직접투자펀드는 우수 IP를 직접 매입하여 수익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우수 IP가 소멸되거나 해외기업 또는 해외 NPE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IP수익화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 IP수익화시장에서 펀드는 소송의 제반비용에 대해 투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해외 NPE들의 공격에 대해 재정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우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각 시장에서의 적정 IP직접투자시장 규모) 미국의 IP직접투자펀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각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IP직접투자펀드시장의 규모를 추정함

〈IP직접투자시장별 국내규모추정 고려요인〉

시장구분	국내 필요 규모 추정 고려요인
IP거래시장(IP매입)	미국특허청 유효특허건수 중 한국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IP수익화시장(IP수익화)	미국내 우리기업의 IP분쟁비중

- (IP거래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 규모 추정) IP거래시장에서의 IP직접투자펀드 규모는 IP투자펀드가 우수 IP매입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특허청 유효특허건수 중 한국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필요규모를 추정

※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정부 R&D의 평균 피인용수(4.0개)는 미연방 R&D(6.1개)에 비해 낮지만 일본(3.5개), 독일(4.0개), 중국(3.4개)에 비해 우수하며, 삼극특허비율은 미연방 R&D(2.3%)대비 우수한편(10.4%)임

- 미국 유효특허 중 한국인 국적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77%에 해당됨

〈미국 유효특허 중 한국인 국적 특허 비중〉

	미국특허청 보유특허	한국인 국적 특허	비중
2019	3,131,427	174,490	5.57%
2020	3,348,531	192,692	5.75%
2021	3,327,540	198,834	5.98%
2019~2021 평균(각 연도 비중의 평균값)			5.77%

주1. 한국인 국적 특허수는 한국인이 공동출원인으로 등록된 것도 포함한 수치임

출처: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2023.7 집계)

- IP거래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 = 미국 IP거래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규모 X 미국유효특허 중 한국인 국적 특허 비중으로 추정값을 산출
- IP거래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는 9.8억달러의 5.77%에 해당되는 0.565억 달러의 시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IP거래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

	미국시장	한국인특허비중	적정시장규모	
			(억달러)	(억원)
필요금액	9.8억달러	5.77%	0.565억 달러 (=9.8억달러X5.77%)	759.1억원*

*환율: 1,343원 (8/18일 한국은행 기준)

- (IP수익화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 규모 추정) IP수익화시장에서 IP직접투자펀드 규모는 해외 NPE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방어하거나 우리나라 특허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점에서 미국내 우리기업의 IP분쟁비중을 바탕으로 필요규모를 추정

〈미국 내 우리기업의 IP분쟁비중〉

	전체분쟁건수	우리기업	비중
2019	3,588	109	3.0%
2020	4,060	97	2.4%
2021	4,071	134	3.3%
평균	11,719	340	2.9%

*평균값은 누적합의 평균으로 구함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22),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

- IP수익화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 미국 IP수익화시장의 IP직접투자펀드규모 X 미국내 한국기업의 IP분쟁비율으로 추정값을 산출
- IP수익화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는 6.346억달러의 2.9%에 해당되는 0.184억 달러의 시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IP수익화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IP직접투자펀드시장규모〉

	미국시장	한국기업분쟁비율	적정시장규모	
			(억달러)	(억원)
필요금액	6.346억달러	2.9%	0.184억 달러 (=6.346억달러X2.9%)	247.3억원*

*환율: 1,343원 (8/18일 한국은행 기준)

- 우수 IP의 미활용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NPE의 소송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IP직접투자펀드시장은 0.774억 달러의 규모로 형성될 필요가 있음**

〈국내 IP직접투자펀드 시장의 필요 규모〉

	적정 필요규모	
	억달러	억원
IP거래시장	0.565	759.1
IP수익화시장	0.184	247.3
국내 필요규모	0.749	1006.3

다. 국내 IP직접투자펀드의 모태펀드 적정 출자 규모

- IP직접투자는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필수적인 고난이도 투자영역으로 민간의 자발적 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이 형성되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IP직접투자를 목적으로 한 모태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매년 신규로 조성되어야 할 **적정 필요 정부출자규모를 추정함**

- IP직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할 **국내 시장규모는 1,006.3억원**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60%를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1,006.3억원의 60%에 해당되는 **603.8억원을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 결성된 모태펀드 특허계정 IP직접펀드에서 정부출자비율 평균인 60%를 적용

** 출자율을 현재의 60% → 50%로 낮출 경우, 매년 503.15억원을 모태펀드에서 출자할 필요하나, IP직접투자가 고난이도 투자분야인 점을 고려시, 출자율은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이는 IP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미국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특허를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IP직접투자 펀드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국내외 IP직접투자 시장 조성규모 등*에 따라 국내에 필요한 IP직접투자 펀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미국시장 이외 국내외에서도 IP직접투자 시장이 조성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거나, IP직접투자 펀드에서 우리나라 특허뿐만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등

3 기대되는 무역수지개선 효과

□ IP직접투자펀드는 우리기업의 우수 IP를 바탕으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및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IP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IP직접투자 펀드 기대수익 추정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분석을 실시함

- 분석은 ①현재 운용중인 IP직접투자펀드의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추정한 경우와 ②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국내 IP직접투자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추정한 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

① 현재 IP직접투자펀드 운용사의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추정

- 정부출자 IP직접투자펀드 운용사를 통한 IP직접투자 펀드의 총 투자금액은 모태펀드와 민간펀드 포함 112.7백만 달러*(1,513억 원)에 해당

* 1,343원/달러 적용시(2023.8.18. 기준, 한국은행)

- IP직접투자 펀드의 기대수익률(IRR)을 8%로 가정²⁵⁾하고, 7년간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 추정하면, 총 80.4백 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대할 수 있음

* IP모태펀드는 투자자 모집 후 투자기간 4년 정도, 각 운용사가 수익을 내는 것은 부정기적, VC에게 최종수익배분은 마지막 해에 원금과 같이 정리되는 것으로 내부수익률(IRR)을 적용함

** 정부출자 IP직접투자펀드의 경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외기업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무역수지수출의 항목으로 가정, 총 112.7백만달러(1,513억원)를 투입하여 7년간 총 80.4백만 달러 수익을 냄 (기대수익률 IRR 8%)

〈최근 3년 정부출자한 IP직접투자펀드의 기대 내부수익 산정〉

출자 연도	운용사	모집금액(단위: 억원)			기대 수익률	총수입 (백만달러)	수익 (백만달러)
		모태펀드	민간펀드	총액 (백만달러)			
'20년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240	167	407(30.3)	8%	51.9	21.6
'21년	아이디벤처스	160	110	270(20.1)		34.5	14.4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140	94	234(17.4)		29.9	12.4
'22년	케이그라운드벤처스	180	122	302(22.5)		38.5	16.1
	연세대학교기술지주	180	120	300(22.3)		38.3	15.9
계		900	611	1,513(112.7)		193.1	80.4

주 : 1. 1 미국 달러 = 1.343 대한민국 원 (23년 8월 18일 원-달러 기준)

2. 기대수익률(IRR) 8%로 가정

25) IP금융투자 프로젝트의 안정형 기대수익률은 일반적으로 8% 이하를 목표로 함(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2020.07.14.)

② ‘국내 IP직접투자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바탕으로 추정

- ‘국내 IP투자펀드 필요 규모 분석’을 통해 추정된 적정필요 정부출자금액을 7년간 1,006.3억 원(74.9백만 달러)²⁶⁾씩 매년 투자하면 총 7,278.1억 원(541.9백만 달러)임
- IP직접투자 펀드의 기대수익률(IRR)을 8%로 가정하면, '24년 ~ '30년까지 각 7년간 IP 직접투자펀드 수익의 총합은 374.4백만 달러 수익 창출을 통해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출자 IP직접투자펀드의 기대 내부수익 추계〉

출자 연도	IP투자펀드	모집금액(단위: 억원)				내부 수익률 (IRR)	7년 후 성과	
		모태펀드	민간펀드	총액 (억원, 백만달러)			총수입 (백만달러)	수익 (백만달러)
'24년	민간운용사 + 모태펀드	603.8	402.5	1006.3	74.9	8%	128.4	53.5
'25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26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27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28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29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30년		603.8	402.5	1006.3	74.9		128.4	53.5
계		4,226.6	2,818.0	7,044.3	524.5		898.9	374.4

26) 연평균 2019~2021 값 사용

제6장

IP직접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개선방안

1. 모태펀드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의 확대
2.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3. 민간투자금 유치 방안
4. IP투자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제6장 | IP직접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개선방안

1 모태펀드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의 확대

□ 경쟁기업 IP분석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

- (필요성) IP창출·보강·분쟁대응 외 경쟁기업 IP분석(FTO*)과 같은 용역까지 확장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FTO(Freedom to Operate):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특허의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조사로, 기업은 FTO 분석을 통해 자사의 실시 기술이 유효한 타인의 특허권 범위를 침해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특허 침해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술 라이선스 아웃(우리 회사의 기술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을 추진할 때, 또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받을 때 등 다양한 시기에 FTO 분석 결과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의 투자과정(주로 시리즈B 이상)에서 투자회사들이 기업에 FTO를 요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이미 필요한 IP창출, 보강이 된 상태*이고, 현재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업 활동 및 상장 시 FTO 리포트 등 경쟁기업의 IP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 現 모태펀드는 투자금을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투자하는 것을 인정함

〈FTO의 중요성〉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용이 다른 특허권을 침해한 사례: Merck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 키트루다는 PD-1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로 Merck는 미국 등록 특허를 통해 항체와 항체의 상보 결정 부위(CDR) 6곳의 서열을 명시해 키트루다를 직접 보호하고 있었음
- 반면 일본 오노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록 특허의 독립 청구항 제1항의 내용은 항PD-1 단일 클론 항체를 약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환자의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노제약은 항PD-1 항체의 종양 치료 용도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Merck의 특허가 오노제약의 항PD-1 항체의 암 치료 용도가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됐더라도 특정 서열의 항체에 대한 진보성 등 특허성을 인정받았기에 Merck의 키트루다를 보호하는 미국 등록 특허는 유효하게 됨.
- 그러나 Merck가 **키트루다 항체를 암 치료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하면 오노제약의 미국 등록 특허 독립 청구항 제1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오노제약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
- 결국 Merck는 키트루다를 직접 보호하는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제약 및 BMS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로열티를 지급

※ 출처 : 막대한 자금투입 바이오산업 'FTO 분석' 중요, 메디팜스투데이('21.08.19)

○ (개선방안) FTO 분석을 통해 자사의 실시 기술이 유효한 타인의 특허권 범위를 침해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특허 침해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예방

- (수정안)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①투자 전 해당 사업화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며, ②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는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되어야 함

* 분쟁대응에는 경쟁기업의 IP분석(FTO)도 포함함.

□ IP세컨더리 가치평가 기관의 확대

- (필요성) 현재 발명진흥법 상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로열티 공제법이나, IP프로젝트 수익권은 미국소송에서의 손해액추정에 기반 한 평가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에는 손해액추정에 기반 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 평가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발명의 소송에 대해 '데미지 엑스퍼트'가 전문분야로서 발달하여 가치평가 및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등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발명 등의 손해액추정에 기반 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검증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미국과 같이 전문분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
- (개선방안) 발명의 평가기관 외 손해액 산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이력을 보유한 경우도 평가기관으로서 인정
 - 현재 손해액 산정 기반 가치평가 분야에 대한 이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가치평가 기관의 요건을 확대하여 향후 이 분야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2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 IP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통한 조기 회수 시장 확대

- (필요성)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에 주목적투자자로 IP세컨더리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IP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IP세컨더리 또는 IP서비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가능('23년 특허기술사업화 펀드)

- 펀드 청산시 현금화하는 과정은 (1) M&A를 통한 블록딜 형태의 지분 매각, (2) IPO를 통한 주식 거래 시장에서 보유 주식 처분, 혹은 (3) 피투자회사에게 해당 지분의 재매각 등이 일반적이나 국내는 이러한 회수 시장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① IP직접투자가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 ② 로열티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지급받을 경우 초기 수익화를 위해 필요하였던 수익화 비용에 대한 투자가 펀드 기간 만기 등으로 인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① IP직접투자가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 대부분의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을 기준으로 소송이 심화되는 경우 1심 판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되며, 그 사이 IPR 등이 걸리게 되는 경우 1년여가 추가적으로 걸리게 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수익발생의 확정성은 증가하더라도 펀드 기간 만기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음

- ② 로열티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지급받을 경우: 라이선싱이나 협상 결과 정액기술료(lump-sum)* 방식이 아닌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경우, 현재 조기에 회수는 불가능하나 미래의 기간에 걸친 확정 발생 현금이 있을 수 있음

* 정액기술료: 일정한 금액으로 약정된 기술료를 일시 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액기술료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합의된 정액의 기술료를 지급

** 경상기술료: 해당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 또는 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개선방안) IP세컨더리펀드의 조성을 통한 회수단계에 투자

- '20년부터 IP직접투자펀드 조성이 본격화 되었으므로 펀드 청산시점이 도래하는 '27년부터 본격적인 IP세컨더리 펀드를 조성

3 민간투자금 유치 방안

□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IP 직접투자의 경우 회수와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위험도가 높고, 낮은 IP프로젝트 투자 인지로 인해 IP투자의 LP모집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IP직접투자의 경우 별도의 프로젝트 투자 방법으로 특정 또는 군집 IP를 중심으로 법인 또는 도관을 만들어 자금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서 각 관련 의사결정 주체들로 하여금 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LP모집이 용이하지 않음
 - ※ 특허 계정의 펀드 IP 기업투자자와 IP 직접투자자를 모두 운용해 본 경험으로 IP 직접투자의 민간투자자 발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자문결과, '23.10.8)
- IP직접투자시장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
- (개선방안) LP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청 소관사업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하거나 특허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특허청 소관사업 (IP창출, 활용, 분쟁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선정시 가산점 혜택을 제공
 - 해당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료의 일부를 감면

□ IP패키지 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자 유입

- (필요성) 벤처캐피탈이 IP직접투자 펀드를 주목적만으로 운용하기에 운영 난이도가 높아 민간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여러 특수목적을 하나의 펀드에 묶어 운용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IP 펀드는 직접 수익화 펀드, 특허 기술 사업화 펀드 등은 서로 주목적을 달리하는 펀드로 각각 나오고 있음
 - 특히 직접 수익화 펀드의 경우 운영 난이도가 높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개선방안) 하나의 IP 펀드 내에 ① 직접 수익화 목적 ② 특허 기술 사업화 목적 ③ IP 세컨더리 목적 등 각각의 목적이 내재한 IP 패키지 펀드 조성

- IP 패키지 펀드를 통해 집중하고자 하는 투자 분야의 목적 비율을 조정하여 투자 및 딜 소싱 난이도를 경감시킬 수 있음
- IP 직접 수익화 관련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서 민간투자 유입을 활발하게 하여 관련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4 IP투자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 IP직접투자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

- (필요성) 특허 수익화에 대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소송에 대한 실무 및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특허권자들의 특허 수익화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그동안 해외 업체의 특허 공격에 대한 방어에 집중되어 있어 특허를 활용하여 수익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대기업 특허부서의 출원/방어위주의 IP전문성과 차별되는 IP수익화 전문가가 필요함
 - 해외 NPE의 소송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IP를 침해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IP수익화를 진행할 수 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IP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 (개선방안) IP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IP금융투자 각 참여 주체별(수요자, 중계자, 공급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IP투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필요성) 다양한 투자 모델이나 수익화 전력 등 민간 출자자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IP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음
 - IP프로젝트 투자는 현재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 영화 프로젝트 투자가 활성화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영화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어려움 등을 IP 프로젝트 투자자 및 GP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IP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화 성공 사례 공유 및 관련 세미나를 통해 IP투자에 대한 홍보 강화
 - ※ (세미나 주제 예시) 특허 유동화 판례 분석, IP 프로젝트 투자 구조, 투자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프로젝트 투자 시 세무/회계 등

참고1 국내 IP직접투자펀드 조성규모 추정치(3년치, 5년치 데이터)

(A) IP거래시장

미국시장규모

미국 IP중개거래시장(brokered patent market) 규모(누적)

	2020(Q1)	2021(Q1)	2022(Q1)
The brokered patent market	360	380	400
평균(연간) 성장규모	20억달러/year		

출처: The brokered patent market in 2020(IAM, 2021), The brokered patent market in 2021(IAM, 2022), ROI Broker Summit 2023(Richardson Oliver Insights, 2023)

NPE 관련

연간	9.8(억달러)	49.0%
----	----------	-------

출처: Distribution of buyer type by sale year 2016~2017(IAM, 2018)

한국시장규모

미국 유효특허 중 한국인 국적 특허 비중

	미국특허청 보유특허	한국인 국적 특허	비중
2017	2,984,825	153,071	5.13%
2018	3,063,494	164,354	5.36%
2019	3,131,427	174,490	5.57%
2020	3,348,531	192,692	5.75%
2021	3,327,540	198,834	5.98%
2019~2021 평균(각 연도 비중의 평균값)			5.77%
2017~2021 평균(각 연도 비중의 평균값)			5.56%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2023.7 집계)

한국 IP거래시장 IP직접펀드 필요규모

	필요(적정) 규모		필요(적정) 정부출자금(60%)
연간(2019~2021 값 사용)	0.565억달러	759.1억원	455.4
연간(2017~2021 값 사용)	0.545억달러	731.7억원	439.0

*환율: 1,343원 (8/18일 한국은행 기준)

(B) IP수익화시장

미국시장규모

복미 소송투자펀드 시장규모

By Case Type	2022	2023	2024	2025
Commercial Litigation	1,809.9	1,999.1	2,212.1	2,452.4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644.9	720.3	805.9	903.2

출처: Global Litigation Funding Investment Market(Research Nester, 2023)

미국IP소송투자펀드 시장규모(2023기준)

연간	6.346억달러	복미의 88.1%
----	----------	-----------

출처: Distribution of buyer type by sale year 2016~2017(IAM, 2018)

한국시장규모

미국내 우리기업 분쟁비중

	전체	우리기업	비중
2017	4,037	99	2.45%
2018	3,657	131	3.58%
2019	3,588	109	3.04%
2020	4,060	97	2.39%
2021	4,071	134	3.29%
2019~2021 누적합의 평균	11,719	340	2.90%
2017~2021 누적합의 평균	19,413	570	2.94%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2023.7 집계)

한국 IP수익화시장 IP직접펀드 필요규모

	필요(적정) 규모		필요(적정) 정부출자금(60%)
연간(2019~2021 값 사용)	0.184억달러	247.3 억원	148.4억원
연간(2017~2021 값 사용)	0.186억달러	250.2 억원	150.1억원

우리나라 IP직접투자펀드 필요 시장 규모 및 필요 정부출자금 (A+B)

	필요(적정) 규모(관련 시장)		필요(적정) 정부출자금(60%)
연간(2019~2021 값 사용)	0.749억달러	1006.3억원	603.8 억원
연간(2017~2021 값 사용)	0.731억달러	981.9 억원	589.1 억원

참고2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필요규모

□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의 필요성

- 국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방식은 기업투자와 프로젝트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IP투자에 적용하면 기업투자는 IP기업투자, 프로젝트투자는 IP직접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IP직접투자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운영 (벤처투자법§2제1호다목)

〈 벤처투자법(§2조제1호)상 중소·벤처기업 투자 방식 〉

구분	세부 내용
기업투자 (IP기업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등을 통한 기업의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 투자 (IP직접투자)	①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②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 * 일반적 기업지분(주식) 취득이 아닌, 기술개발 등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 (IP기업투자) 우수한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IP가치평가를 통해 IP기반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
 - 기업이 핵심기술을 IP로 권리화함에 따라, 단순 신용도 등이 아닌 제대로 된 **IP가치평가로 사업화 자금 조달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 IP와 더불어 기업 신용도, 성장성 및 기술 차별성도 같이 평가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 위험도가 낮은 장점이 있음
- (IP직접투자) IP에 직접 투자하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직접 특허를 매입(전용실시계약 체결 등)하여 **라이선싱과 소송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투자
 - 기업은 라이선싱 실시료*나 소송**을 통한 배상액(합의금)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 SLB 펀드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IP가 가진 고유특성인 전용실시권 제도의 강점을 살려 특허에 대한 독점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상실시권으로 추가수익 창출 가능
 - ** IP 소송을 통한 Up-Side potential 수익 극대화로 High Risk - High Return을 추구하는 투자자 Needs를 충족

〈IP직접투자와 IP기업투자 비교〉

구분	IP직접투자	IP기업투자
주목적	라이선싱, 소송 등을 통한 IP수익화	IP가치평가 기반의 사업화 자금조달
필요주체	IP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한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	IP사업화가 필요한 초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시장에서의 역할	IP직접투자를 통한 미활용특허의 활용제고 및 우수특허의 해외유출 방지	기업의 보유한 우수 IP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특징	미활용특허를 통한 수익화 가능 IP투자 상품의 다양성 확보	우수특허를 자사가 보유 투자자본으로 인한 경영간섭우려

□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 다양한 IP금융기법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IP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 (IP활용의 목적) 기업의 해당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자금 조달 방식을 선정

- IP를 자사 사업의 제품화나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IP기업투자를 활용
- 기업이 활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나, 산업전반의 활용중인 핵심 IP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IP수익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직접투자를 활용

○ IP투자에 있어서 IP기업투자와 IP직접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양자택일적인 문제가 아니며 IP자산을 이용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 IP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IP투자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단일화된 IP투자가 아닌 다양한 IP투자 상품 구조를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IP직접투자와 IP기업투자는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IP투자시장 활성화 측면) IP기업투자는 혁신기술 IP의 재창출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며 IP직접투자는 다양한 IP투자 상품의 수익화를 통해 IP투자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

○ (IP기업투자) 중소·벤처기업의 IP가치평가 기반 사업화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서 혁신기술 IP의 재창출 기반을 마련해 줄수 있음

○ (IP직접투자) 새로운 IP활용 체계를 구축, 신규 IP투자영역의 개척함으로써 다양한 IP투자 상품으로 민간투자자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

□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 펀드의 필요 규모

- ❶ IP기업투자 펀드는 연간 1,500억원, ❷ IP직접투자 펀드는 연간 1,006억원 수준 이상의 투자가 필요

❶ (IP기업투자 펀드) 다수 민간 운용사(VC)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내 IP투자시장에 IP의 가치에 기반한 혁신기업 투자가 지속된다는 의미있는 인식을 민간기업 및 금융권 등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최소한 IP혁신기업 100개社*에는 정부주도의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로 매년 최소 400억원 이상은 출자가 필요함

* 평균 기업투자액(15억원)을 고려시, 1,500억원 펀드로 연간 100개社 투자 가능
(연간 100개社は IP보유 중소기업 대비 0.16%, 이노비즈기업 대비 0.5%에 불과)

** IP기업투자 펀드('06~'22년)의 약정액 대비 조성규모 : 4.0배 (400억 → 최대 1,600억)

❷ (IP직접투자 펀드) 본 과제의 분석결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특허를 중점 활용하여 IP직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006억원 규모*의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로 매년 최소 603.8억원 이상은 출자가 필요함

* 본 과제에서 도출된 조성액은 미국시장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IP 직접투자시장을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확장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IP직접투자펀드 규모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P거래시장에서의 IP펀드규모 759억원, IP수익화시장에서의 IP펀드규모 247억원으로 약 1,006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야 함

** 다만, 국내 IP투자시장은 여전히 IP기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고, IP직접투자는 고난이도의 투자가 필요한 신규의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펀드에서 발생한 회수재원을 IP기업투자 펀드에 활용하되, 정책적인 목표(ex. 400억원 출자)를 초과하는 재원은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에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ISBN : 979-11-6884-128-4 13500
DOI : 10.8080/P9791168841284